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1. 유생의 상소 투쟁
- 2. 시민의 투쟁
- 3.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 4. 국채보상운동
- 5. 의사 · 열사의 항쟁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1. 유생의 상소 투쟁

1) 을사조약 체결 이전의 상소운동

한국에서 淸國과의 종주권 쟁탈을 전개한지 20여 년만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러시아와 대결 10년만에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제국주의일본은 마침내 열강들의 묵인 아래 한국의 주권 침탈을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침탈에 따라 한국민은 거족적인 항쟁을 벌여 나갔다. 이와 같은 강인한 항일투쟁의 이면에는 침략자 일제에 대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우리민족의 우월 의식과 배일 사상, 민족적인 자긍심이 잠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항일운동은 그들의 대한침략의 변천에 따라 때로는 열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부 당국에 상소문을 올리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저항에서부터, 때로는 자주 자립을 위한 自强運動으로, 요인의 암살이나 의병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투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중 상소운동은 전한현직 관리 내지는 유생들에 의해 전개된 것으로, 방법상으로는 가장 소극적인 투쟁일지 모르나 일제의 압박 속에서 당시 최고 지식인들에 의해 가장먼저 이루어졌으며, 다른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크다고 하겠다.

1904년 2월 조인된 한일의정서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하게 된 1905년 을사조약의 길을 열었고, 1910년 한국병탄의 기반을 다져 놓은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2월 5일 전국의 유생을 회유하기 위하여 기밀비 1천원을 대여하여 抵當期限이 만료된 儒生集合所의 가옥을 찾아주고 家券과 賣渡證書를 받아두기도 하였으

며,1) 한일의정서를 조인하기 전날인 22일에는 조약체결에 반대하던 度支部 大臣 李容翊을 일본으로 압송하여 조약체결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굴욕적인 의정서의 체결에 격분한 국민들은 단연코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일의정서가 조인된지 나흘 뒤, 공포되기 하루 전인 2월 26일 前議官 呂永祚, 前都事 李學宰, 前參奉 尹敦求 등은 國是建議所를 만들고 건의서를 中樞院과 정부에 상정하고 종로와 남대문에도 내걸었다.2) 다음날인 2월 27일에는 議政府參贊 權重奭을 위시하여 中樞院副議長 李裕寅 등은 여러 議官들과 함께 한일의정서를 반대하고, 그 체결에 앞장섰던 李址鎔에게 글을 보내 힐문하였다. 3월 1일에는 역시 이유인과 여러 의관들이 이지용과 具完喜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려 그들의 매국죄를 조속히 다스려 줄 것을 청원하였다.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월 2일에는 한일의정서 체결에 관여한 外部交涉局長 구완회와 磚洞 康洪大의 집에 폭탄이 투척되기도 했으며,4) 보부상조직인 商務社를 중심으로 연설회의 개최 등의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일제는 이를 근거로 각종 협약 체결, 일본인 고용, 차관 제공, 이권 침탈을 노골화하였다. 특히 6월 6일에 이르러 일본공사가 '경영에 착수한 各部에 대하여 경영 완성 후 50년간'의 계약기간을 가지는 황무지의 개척권을 외부대신에게 手交하고, 동월 18일 이 사실이 《皇城新聞》에 보도되자 일제의 무모한 요구에 대해 전국의 여론이 물끓듯 하였다. 6월 중순 경부터 전국에서는 일본의 對韓政策이 오로지 利益壟斷主義에 있다고 논하면서 철도・어업・은행권・울릉도 벌목 등의 數條目을 들어 일제를 배척하는 궐기 격문이 나붙기 시작했고, 상소문이 끊이지 않아 일제는 외부대신에게 조회하고 법부대신과 警務使에게 조사 처분할 것을 요구할 정도였다.5

6월 19일 儒生 金箕祐, 進士 鄭東時 등은 철도 役夫의 작폐, 北進軍의 폭

^{1)《}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4년 機密本省往.

^{2) 《}皇城新聞》, 1904년 2월 26일,

³⁾ 鄭 喬. 《大韓季年史》하(國史編纂委員會, 1957), 권 7, 1904년 2월,

^{4) 《}皇城新聞》, 1904년 3월 4일.

^{5) 《}日本外交文書》37-1, No. 654, 명치 37년 6월 18일, 儒生一派ノ排日檄文ニ關スル.

행. 銀行券 發用. 不通 內地에 불법거주. 바다의 어업권 침탈. 울릉도 삼림벌 목. 제주도 어업기지 불법 점유 등을 거론하며 13도에 發通하다가 일본공사 관의 照請으로 경무청에 피체되었다.6) 이튿날에는 前議官 鄭耆朝, 前監察 崔 東植 등 10여 명이 일제의 황무지 勒借에 대한 격앙된 배일통문을 전국에 배포하여 항의하였고.7) 22일에는 종2품 李相卨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 대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며, 前議官 洪肯燮은 황무지 개간권 요구의 부당함을 극론하면서 御供院의 철폐 등 17개 조목을 들어 정부에 청원하였다. 또한 從 1品 李乾夏, 從2品 朴箕陽・李相卨, 奉常司副提調 宋奎憲, 前議官 安鍾悳 등 宰臣들과 李舜範을 필두로 한 경향 각지 유생들의 반대 상소와 建白書가 끊 이지 않았다. 그리고 前秘書丞 尹秉, 前郡守 洪弼周, 前承旨 李範昌, 前主事 李沂 등은 선언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각성을 호소하였다.8) 이렇듯 상소를 통하여 황무지 개척권 이양에 반대하던 조신과 유생들은 좀더 강력하고 조 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輔安會를 조직하였다. 심지어 7월에는 平 理院判事 許蔿 이하의 이름으로 된 일본 배척의 격문이 寧邊・安州 등지에 나붙었는데 특히 영변에서는 야간에 일본군을 향해 발포하는 사태에까지 이 르렀다. 이에 일본공사는 집회를 금할 필요를 느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격 문의 주모자를 곧 방면하고 궁중에서 금전을 하사하여 집회의 기세를 돋우 고 있었다.9)

1905년에 들어서도 각지에서 소요사태가 계속되자 일본 헌병대는 경성과 부근의 치안권을 장악하였고, 1월 말에는 경무청이 고등경찰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는 서울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¹⁰⁾ 이 가운데 崔益鉉은 일본의 경찰사무 집행을 비난하면서 臺辣制度 부활. 內藏院의 세금 축소. 輪對制度의 복구를 요구하였다.¹¹⁾ 그는

^{6) 《}皇城新聞》, 1904년 6월 20일·23일.

⁷⁾ 黄 玹,《梅泉野錄》 권 4(國史編纂委員會, 1955), 1904년 4월. 《皇城新聞》, 1904년 6월 21·22일.

⁸⁾ 金允植,《續陰晴史》하(國史編纂委員會, 1960), 권 11, 1904년 7월 12일.

^{9)《}日本外交文書》37-1, No. 676, 명치 37년 7월 17일, 排日檄文ノ張本人處理ノ件.

^{10)《}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397~401쪽.

^{11)《}高宗實錄》, 광무 9년 정월 14일, 議政府贊政崔益鉉疏略.

계속하여 "借款이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외국에 의탁하는 것이 반드시 화를 초래하리라"고 하였고.12) 李址鎔 등 매국 역적 5.6명을 사형에 처하라 는 상소를 올렸다. 이 疏本이 《皇城新聞》에 게재되니 일본공사 하야시는 최 익현과 秘書院丞 허위를 엄중 처벌하고 이같은 행동이 전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다.¹³⁾ 정2품 金鶴鎭은 "지금 시국이 날로 변하여 강한 이웃 나라가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 일을 처리하는 판인데, 옛날을 돌아 보나. 오늘날을 살펴보나 지금처럼 남의 통제를 받은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 까. … 8~9년 이래로 중요 철도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고, 온 나라 광산의 이권도 다른 나라에 소속되었으며, 관제를 고쳐 바로잡고 화폐를 바로 고치 는 일까지도 자체로 작정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개탄하면서, 외국 차관과 일본화폐 유통의 폐해, 일본군사령부의 한국인 소송 수리와 재 판운영의 부정을 지적하고 그 개혁방안을 건의하였다.14) 이에 일본 헌병대는 11일 일본을 배척하고 한일의정서를 비난하여 경성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였 다는 구실 아래 최익현ㆍ김학진ㆍ허위를 헌병대에 구금하고, 궁성을 호위한 다는 명목으로 이날 오후 10시 경부터 헌병 25명을 궁성에 파견하였다.15) 이 후 최익현은 일본 헌병에 의해 抱川으로 강제 호송되었다. 이후 3월 22일 재차 상소를 위해 상경하였다가 일본 헌병에게 연행되어 定山으로 퇴거당 했다.16)

7월 29일에는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William H. Taft)와 일본 수상 가츠라 타로(桂太郎) 간에 覺書가 성립되고 8월 12일 런던에서 제2차 英日同盟이조인되었다. 또 9월 5일에는 포오츠머드(Portsmouth)에서 러시아와 일본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무렵 한국은 구미 열강에게 일본의 침략을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제2차 영일동맹조약이 공포된 후로 유생들은 일제가 강제로 보호조약을 체결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저지운동을 국내외에서 전개하고자 했다.

^{12) 《}高宗實錄》, 광무 9년 2월 3일, 待罪臣崔益鉉疏略.

^{13)《}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453~454\.

^{14) 《}高宗實錄》, 광무 9년 3월 7일, 正二品金鶴鎭疏略.

^{15) 《}皇城新聞》, 광무 9년 3월 14일.

^{16) 《}皇城新聞》, 광무 9년 3월 24 · 25 · 27일.

러일전쟁의 종결과 사후 처리를 위한 강화회담이 미국 포오츠머드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前注書 羅寅永과 前主事 吳基鎬·李沂는 이 회담에서 한국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 조야에 한국의 독립을보장하도록 호소하기 위하여 도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공사 하야시의 방해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1905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롯한 일본 정계 요인들에게 동양 평화를 위하여한·청·일 3국이 동맹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선린의 交誼로서 독립을 보장하라고 역설하였다. 한편 이들은 일본 정부에도 서한을 보내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모든 조약과 선언을 신의로 지키라고 요구하는 한편,17日皇에게 致書하여한・일간의 여러 조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양국간의이해를 說論하였다.18) 마침내 동경의 여러 신문에서 을사조약의 내용을 보도하자 나인영은 외부대신 朴齊純에게 급전을 보내 "목을 베일지언정 韓日協約에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오기호 및 부모상을 당한 이기와 함께다음해 2월 귀국하여한층 격렬한 대일항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大韓十三道儒約所의 유생 대표 金東弼・金錫恒・宋鍾潤・李侙 등 26명은 1905년 음력 9월 주한 각국 공사관에 公函을 보내어 그 동안 일제가 저지른 14개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는 國際公法에 어긋나는 것임을 논박하고, 일본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한국을 후원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199 또 이들은 11월 10일 이토에게도 서한을 보내 한・일간의 여러 조약에 명시된 조항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시모노세키(馬關)條約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임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宣傳詔書에서는 한국의 독립 유지를 선언하였으며,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通牒辨明書에서도 한국의 독립이 공고하다고 하였으므로 일본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유생 대표는 일본공사 하야시의 횡포를 꼬집어 통박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한・일 양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하였다. 200

¹⁷⁾ 鄭 喬, 《大韓季年史》하, 1905년 11월.

¹⁸⁾ 위와 같음.

¹⁹⁾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1(1965), 90~92\.

前參贊 郭鍾錫은 고종황제에게 올린 장문의 상소를 통하여 일제의 이권침 탈과 전횡, 이토의 방한을 경계하고 한국의 처지를 "정사에 관한 지시를 내 리는 것이 몽땅 주재한 大使와 顧問에게 달려 있고, 이른바 一進會의 패거리 라는 것들이 또 그에 추종해서 상호 비호해 주고, 서로 배짱이 맞아 끝없이 명분을 어지럽히고 법을 문란하게 만들어도, 폐하와 정부의 각 부에서는 스 스로 가타부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內治를 다질 것, 신의를 가지고 萬國・日本 등과 담판하여 화친에 관한 약조를 중하게 만 들고 굳게 다져 동양의 안정을 보장하는 큰 계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 다.21) 이와 같이 을사조약의 체결 전, 유생들은 공함이나 서한을 통하여 일 본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한일간의 여러 조약에서 명시된 한국의 독립을 보 장한다는 조항을 일본은 실천할 것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은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여,²²⁾ 일제의 만행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강 대국들에게 한국의 지원을 호소함으로써 닥쳐올 보호조약을 저지하려고 하 였다.

유생들이 보낸 공함이나 서한의 내용은 을미의병 당시 유생들의 斥倭運動 혹은 排日運動의 보수적인 경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유생 자체가 이미 서구화 혹은 근대화의 사고방식을 지님으로써 국가관의 변화가 점차 일어나고 있었던 장조라고도 할 수 있다.²³⁾

11월 5일 일제의 주구인 일진회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선언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대체로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국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망발이었다. 이에대해 皇城基督教靑年會・國民教育會・大韓俱樂部・憲政研究會 등은 선언문을 즉시 일진회에 돌려보냈고, 그외 여러 단체에서 선언문을 반박하였다. 정부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告示民人〉을 초안하여 발표하고자했으나 警務顧問인 마루야마 시게노부(丸山重俊)의 반대로 발표하지 못했다.24)

²⁰⁾ 鄭 喬, 《大韓季年史》하, 1905년 11월.

^{21) 《}高宗實錄》. 광무 9년 11월 5일. 前參贊 郭鍾錫 疏略 1・2.

²²⁾ 崔永禧,〈乙巳條約締結을 前後한 韓國民의 抗日鬪爭〉(《史叢》12·13, 1968), 610等。

²³⁾ 최영희, 위의 글.

2) 을사조약 반대 상소운동

일제는 무력으로 한국민의 반일운동을 강압하는 한편 회유와 매수로서²⁵⁾을사조약 늑결을 강행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강압하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은 곧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항쟁을 불러일으켰다. 을사조약의 체결은 곧 국가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을사조약 반대운동은 곧 우리 민족이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에 굴종할 수는 없다는 결의에 찬 전국적이고도 전민족적인 투쟁이었다. 이 운동의 방향성은 대외적으로는 일본 침략에 대한 항거와 열강에 대한 후원의 요청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친일 매국노에 대한 규탄과 민족의 실력양성으로 집약되었다.

한국민의 을사조약 체결 반대운동이 얼마나 극렬했는지는 오기하라 히데지로(萩原秀次郎) 代理公使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 신문들이 한국의 보호 문제를 다룬 결과 "그 전에 어떠한 방어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開敎保生會·靑年會 등 단체 및《코리아데일리뉴스》등이 왕성하게 排日主義를 고취시킬 뿐 아니라 특히 주목할 것은 중추원의관들을 교사하여 대외조약의 訂結에 중추원은 관제상 당연히 참여하여야 된다는 건의를 시도하고 혹은 또 하층 인민을 선동하여 소위 의병을 각처에 봉기시키려는 魂膽으로 은밀히 궁중 및 일본 반대측에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하였다.26)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가장 먼저 조약체결에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이 전 · 현직 관리였다. 이들은 상소를 통한 투쟁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진행과정과 상소문의 내용은 즉시《황성신문》·《제국신문》등의 언론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상소 투쟁은 언론계의 활동과 함께 을사

^{24) 《}朝鮮統治史料》권 4(韓日合邦 2). 〈韓國一進會誌〉. 광무 9년 11월 5일.

²⁵⁾ 일본의 을사 5적 등의 매수는 崔永禧, 〈日本公使館記錄中,韓日議定書 乙巳條約에 關한 資料〉(《編史》1, 국사편찬위원회, 1964) 참조.

^{26) 《}日本外交文書》38-1, No. 11(255), 日本ノ韓國保護ノ措置ニ對スル韓國ノ反對 運動ニ關スル件.

조약 반대운동의 선봉이 되었다. 조약의 무효와 매국노의 규탄을 부르짖는 내용의 상소문은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였다. 특히 趙秉世・崔益鉉・閔泳煥・沈相薫・閔秉奭 등 원로대신들의 상소운동은 전국적으로 배일감정을 크게 자극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조약이 늑결되려는 11월 17일 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고종황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친히 불러 거절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라 민고 황제를 알현하여 그 뜻을 상주하였다가 조약 체결 후 면직처분을 받았다. 19일에는 궁내부의 특진관 李根命이, 20일에는 秘書監卿 李愚冕이조약 체결시 토의에 참여했던 모든 대신들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27)또 의정부참정 李相卨이 고종황제에게 조약의 폐기와 매국 賊臣의 처단을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는 조약 체결에 참여한 대신들을 단호히 징벌하여 국헌을 바로잡고 인재를 등용하여 조약의 폐기를 만방에 공포하기를 간청하였다.28)《대한매일신보》는 11월 24일 이상설의 상소문을 게재하고 극구찬양하면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21일에는 외부대신 朴齊純의 친척인 정2품 朴箕陽과 社稷署提調 朴鳳柱가 상소를 올려 매국 역적을 처단하고, 외부대신을 새로 임명하여 각국이 조약의 불법성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29)

한편 가평에서 신병을 요양하고 있던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는 조약 늑결의 소식을 듣자 "나라가 망했으니 나는 世臣으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병을 무릅쓰고 즉시 상경하여 23일 고종황제를 접견하였다. 그는 을사조약의 5개 조항이 모두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한두 신하들이 폐하의 뜻을 받들지도 옛 법을 따르지도 않고, 어찌 제 마음 대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면서 나라를 남에게 넘겨준단 말입니까. 임금과 법을 멸시한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주관해서 토의한 박제순을 빨리

^{27)《}高宗實錄》, 광무 9년 11월 19일, 宮內府特進官李根命箚略·11월 20일, 秘書監卿李愚冕箚略.

²⁸⁾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1,94等.

^{29) 《}高宗實錄》、 광무 9년 11월 21일、正二品朴箕陽疏略・社稷署提調朴鳳柱疏略.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서 세상에 사죄시키며, 그 때 회의에 참가하였던 각 부의 대신들을 모두 우선 본래의 관직에서 파면시키고 法部에서 구류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죄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지시하여 그 문건을 회수해 없애버리고 반드시 剛毅하고 정직한 신하를 외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그 의안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국 공사관, 영사관들에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시문을 써내려 보내기 전에 신은 물러갈 수 없으며, 처분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대궐 섬돌에다 머리를 쪼아 죽을지언정, 의리상 차마 살아서 대궐문 밖에나갈 수 없습니다. 폐하는 빨리 처분을 내려서 500년 동안 조상들이 이룩한 업적을 보존하기 바랍니다(《高宗實錄》, 광무 9년 11월 23일, 原任議政 趙秉世 召見).

이 조병세의 상소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뒤를 이어 중추원의장 閱鍾默을 비롯하여 尹斗炳·朴齊斌·李裕承·丁明燮·曺世煥·高翊相·金鍾護·尹泰榮 등의 상소가 잇따랐다. 또한 유생들은 서울에 大韓十三道儒約所를 두고 21일과 24일 두 차례의 상소문을 올렸다. 24일에는 이근명과 이상설이 재차 상소를 올렸다.

다음날 法部主事 安秉瓚은 직접 입궐하여 상주문을 올린 후 도끼를 메고 大安門 앞에 엎드려 황제의 회답을 기다렸다. 그는 박제순·이지용·이근택 ·이완용·권중현 등을 매국 5적이라고 지칭하면서 머리를 잘라 거리에 매 달아야 한다는 극렬한 상소를 올렸다가 경무국에 구금되었다. 또한 전날 상 소를 올렸던 사람들 외에 중추원찬의 李乾夏를 비롯하여 徐相喬·李鍾泰· 鄭鴻錫·高鼎柱·申性均·姜遠馨 등이 소를 올렸다.

26일에는 조병세를 필두로 趙秉式・洪祐晳・李漢英・丁明燮・安鍾和・李容泰・朴齊璜・尹秉綬・閔泳奎 등이 입궐하여 매국 5적의 처단과 조약의 폐기를 주청하였다. 특히 시강원시독 박제황은 만국공법의 내용을 들어 상소하였다.

만국공법 제98장에는 '횡포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주적인 자립권을 침략하여 빼앗았을 경우 모든 나라들이 호응하여 들고 일어나 구원한다'고 하였으며, 제405장에는 '갑자기 조약을 의논해서 그 조약에 手票한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책임이 없고,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편의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준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406장에는 '해당 국가는 비준이 없게 되면, 그 조약을 즉시 휴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409장에는 '아무리 국왕이 직접 수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15장에는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 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高宗實錄》, 광무 9년 11월 26일, 侍講院侍讀朴齊璜疏略).

박제황은 만국공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조약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저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횡포하고 침략하여 빼앗으며, 급박하게 굴고 위협하고 압박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로 말하면 임금의 승인도 비준도 또 직접 수표도 하지 않았으니, 폐기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들으면, 역시 함께 일어나 구원할 것입니다. 폐하는 下命하여 이른바 '條約條文'을 폐기하고 회수해다가 없애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조약폐기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원로대신들을 중심으로 한 상소운동이 전개되자 조약반대 운동은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商業會議所의 결의로 서울 종로의 六矣廛이 철시하였고, 이에 자극받아 시내 전 상가가 속속 철시를 행해 조약의 파기와 매국 행위에 대해 간접으로나마 항의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생들도 자진 휴학을 단행하여 항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제의 경무고 문인 마루야마는 경찰을 동원하여 철시한 상가를 방문, 개점을 강요하고 각급 학교에도 훈령을 내려 개교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상인과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항쟁을 이어갔다.

26일 주청한 상소문이 아무런 소득이 없자 조병세는 27일 다시 원임의정부대신 자격으로 내부·경무청 등 각부에 牒示를 보내 각 관리들을 궁내부로 모으고 李根命·沈相薰・閔泳煥・趙東潤・金思默・閔種默・金秉煥・李鍾健・崔英夏・李裕寅・李容泰・李相卨 등을 이끌고 재차 상소를 올려, "시일이 경과하면 호흡지간에 국가 대사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속히 처분하여 일을 바로 잡을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조병세는 이 날 일본

공사 하야시에게 을사조약이 일본 군사력의 위협하에 늑결된 것으로 국제공법에 위배되니 정의와 公理에 입각하여 조약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보냈다. 그리고 영국·독일·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 공사관에도 공한을 보내 각국 공사들이 회동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포하도록 호소하였다. 이외에 洪在鳳·李根秀·洪淳馨·朴定陽·李渭來 등이 상소를 올렸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며칠 계속된 대신들의 복합상소에 대하여 고종황제는 疏頭라고 할 수 있는 조병세와 이근명에게 상소의 내용에 대해 "참작하여 헤아린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30) 그러나 조병세ㆍ이근명 등이 뜻을 굽히지 않자 門外出送시키도록 하였다. 결국 조병세의 활동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31) 28일 대안문 앞에서 일본 헌병 수십 명에게 체포당할 때 조병세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을 향하여 격앙된 어조로 을사조약 늑결의 불법성을 설파하여 이를 들은 시민들이 모두 통곡했다고 한다. 한편 崔在學・李始榮・田錫俊 등 평양청년회원 5명이 대안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올리다가 일본헌병에게 체포되어 70여 일만에 석방되기도 하였다.

격렬한 상소운동에도 불구하고 28일에는 상황이 한층 악화되었다. 외부대신 박제순에게는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임명하고 칙임관 1등을 주었으나, 李愚冕 등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조병세와 이근명은 석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 백관들은 민영환을 疏頭로 다시 고종황제에게 연명으로 상주하여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의 처벌, 조약의 철회와 구속 대신들의 석방을 요청하였고, 李商永을 비롯한 성균관 교수들도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공사와 李址鎔 등의 책동으로 구속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平理院으로 쇄도하자 일제는 하는 수 없이 이들을 석방하였다. 그러나 뒤를 이어 상소운동을 전개하던 이근명・尹泰興 등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29일에는 前司憲府監察 崔東植이 평리원에 을사조약을 체결한 5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前贊政 최익현이 매국5적의 죄상을 통렬히 규

^{30) 《}高宗實錄》, 광무 9년 11월 27일.

³¹⁾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1,102쪽.

탄하고 일본의 신의 없음을 들어 조약의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는 상소문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그는 매국 5적들이 하룻밤 사이에 국토와 민족을 왜 적에게 팔아먹었다고 痛疏하고, 5적들을 五車刑, 그의 10族을 도륙하여도 분을 풀 수가 없다고 강력히 상소하였다.32)

이와 같은 최익현의 상소와 더불어 30일에는 민영환이, 12월 1일에는 조병세가 을사조약 늑결에 분개하여 자결하자,33) 이어서 여러 사람들의 상소운동이 계속되었다. 12월 1일 박제순을 대신하여 외부대신대리에 임명된 協辦 尹致昊도 조약체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급선무는 일을 그르친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잘 다스리기 위한 일을 도모하며, 토목공사를 걷어치우고 간사한무당 무리들을 내쫓으며, 궁방의 개인창고의 가렴주구를 엄하게 징계하고, 궁녀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있으니, 바라건대 폐하는 힘쓸 것입니다"34) 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1905년 말까지 학부주사 李相哲, 上等兵 金奉學, 前贊政 洪萬植 등이 자결하였으며, 다음해 4월에는 경연관 宋秉璿이 자결하였다. 상소운동도 계속되어 영돈녕부사 심순택, 궁내부특진관 이근명 등이 疏頭가 되어 12월 7일까지 백관을 이끌고 연명으로 상소한 것이 7차에 이르렀다 35)

이후에도 沈舜澤·李愚冕·朴鳳柱·姜遠馨·安鍾和·尹斗炳·鄭載憲·郭鍾錫·田愚 등이 상소운동을 계속하였고, 또한 權在重·李東暉·李載允·金奭鎭·李承熙 등도 조약의 폐기와 매국노의 주살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완용 등 을사5적도 상소를 올려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였다. 이들은 을사조약의 취지에 대하여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전대로 이며, 종묘사직은 안전하고 황실은 높고 엄숙한데,

^{32) 《}高宗實錄》, 광무 9년 11월 29일, 未死臣崔益鉉疏略.

³³⁾ 을사조약으로 인한 순국항쟁에 대해서는 申載洪,〈主權守護運動〉(《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84), 240~244쪽 참조.

^{34) 《}高宗實錄》, 광무 9년 12월 1일, 外部大臣代理協辦尹致昊疏略.

^{35)《}高宗實錄》, 광무 9년 12월 7일, 宮內府特進官李根命率百官庭請奏.

외교에 대한 한가지 문제만 잠깐 이웃 나라에 맡겼으니. 우리 나라가 부장해 지면 돌려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 약이 아닙니다. 그 연원은 지난 해에 이루어진 의정서와 협정서에 있고. 이 번 것은 다만 이미 이룩된 것을 결속하였을 뿐입니다"라고 하여, 마치 을사 조약 체결 후에도 국가의 독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한일의정서 등에 의 해서 규정된 한일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조약처럼 둘러대었다. 그리고 을사조약 반대운동에 대하여 "반대를 하려면 그 때에 반대했어야 했 을 것이며, 극력 반대했어도 안되면 들고 일어났어야 했을 것이고, 들고 일 어났어도 안되면 죽어버렸어야 했을 것인데. 한 사람도 이런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반대운동은 국교문제 에 감정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하여 운동을 일소에 붙이고 있다. 또한 자신들 뿐 아니라 회의에 참여한 대신들도 말로만 반대하고 끝내는 개정한 일에 힘 을 다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고종황제가 관대히 용서하여 파면시키지 않고 피혐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죄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 다.36) 이에 대하여 宋秉璿, 충청도 관찰사 李渞宰, 郭鍾錫‧吳炳序 등이 이들 의 궤변을 조목조목 공박하면서 처벌을 주장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시작된 상소운동은 1906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을사조약 반대운동에 대한 열기가 식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은 그 동안 전개하였던 상소운동이 소극적 운동이었고 이를 통해서는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병활동이나 매국노의 암살 등 적극적이고 폭력적 투쟁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 직후 萬言疏 奉呈 등의 논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상소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상소를 통한 항거는 소극적이기는 하였으나 봉건적 사회 속에서 더욱이 일제의 감시와 탄압하에서 유교적 교양을 갖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정부에 자신의 입장을 표시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이었다. 그리

^{36)《}高宗實錄》, 광무 9년 12월 16일, 議政府議政大臣學部大臣李完用, 參政大臣朴齊納, 內部大臣李址鎔, 農商工部大臣權重顯, 軍部大臣李根澤等疏略.

고 이 상소운동의 의의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고 항일정신을 촉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³⁷⁾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상소운동을 통하여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이미 일제의 간섭 속에서 대신과 관리의 임명조차 자신의 뜻대로할 수 없었던 고종황제가 을사조약 무효화를 선언하고 자의적으로 조약 체결에 동의한 대신들을 처벌한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현직 관리들과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소극적인 반응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상소를 통하여 만국공법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각국의 공사들이 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조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믿었으나 이는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발상이었다. 열강은 이미 여러 조약을 통하여 일본의 불법적인 침탈행위를 묵인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고, 일본은 기민하게 을사조약의 내용을 변조 번역하여 통지함으로써 각국으로 하여금 이 조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38)

그러나 고종황제 역시 상소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조약체결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상소의 내용과 같이 열강의 협력으로 일제의 불법적인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생들의 잇따른을사조약 반대 상소운동은 여러 한계 속에서도 반일운동을 선도하고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崔昌熙〉

2. 시민의 투쟁

조선 후기 이래 場市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³⁷⁾ 최영희, 앞의 글(1968), 615쪽.

³⁸⁾ 李泰鎮, 〈조약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 을사보호조약〉(《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강제〉(《한국사시민강좌》19, 일조 각, 1996).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장시개설에 따른 이권을 둘러싸고 상인·지역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장시의 성격은 구한말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외국상인들의 국내시장 침투와 商權침투에 대해 한국 상인들은 장시개설을 중지하거나 상업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종퇴위나 군대 해산 같이 국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撤廛하거나 지방의 장시에서는 시장개설을 거부하는 등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19세기 말 조선왕조는 청・일의 각축과 구미열강의 이권쟁탈로 말미암아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개항 직후 日商의 활동범위가 개항장 거류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갑신정변 이후로는 사실상 국내전체로 확장되면서 청・일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 때 淸商이일상을 압도하고 內地에서의 輸入洋品 판매권을 장악하기도 하였지만, 일상의 內地行商이 허용되면서부터는 그들이 직접 미곡산지나 포구에 진출하여곡물을 매집함으로써 조선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유통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의 내지행상과 이들에 의한 곡물의 대일유출로 말미암아 조선의 농촌 경제는 붕괴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조처로 지방관은 자주 방곡령을 발령하고 있었으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방곡령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계기로 한국에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 일제는 정치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제부문에서도 각종 이권을 차지하여 갔다. 더욱이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과 함께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제는 우리 나라의 직접적인 식민지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의 경제적 침략은 더욱 치열해졌다. 또한 일상의 내지행상도 조선 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의병투쟁과 반일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일제의 국권침탈이 극에 달한 1909년 12월부터 1910년 4월에 걸쳐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시장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寧邊・順川・安州・龍川 등지를 중심으로 일어난 시장세 반대운동은 단순한 시위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순사주재소·郡衙 등의 관서를 습격, 파괴하거나 불태우고 일인 관리 및 상인들을 타살시키는 등 적극적인 반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시장세 반대운동은 평안도내 뿐만 아니라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는 차이가 있었지 만 거의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지방세제의 시행과 시장세 징수

외교권을 비롯한 주권이 탈취되어가는 가운데 1904년 8월 이후 한일협정서에 의해 소위 고문정치가 실시되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통감부가 설치됨으로써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고 고심하던 일제는 지방세 징수항목에 대한 논의를 거쳐 1906년 12월에 〈지방세규칙〉을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시장세・浦口稅・旅閣稅・轎稅・人力車稅・자동차세・荷車稅・花稅 등을 지방세 稅目으로 결정하였다.」)

이 〈지방세규칙〉은 단순히 지방관청의 청사건축 및 수리에 관한 경비와 토목건설의 비용을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제 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었다.2) 이후 일제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점차 확보해 갔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경제적 수탈을 계속 강화해 갔다. 이 러한 가운데 일제는 1909년 4월 1일 법률 12호로〈地方費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이 道令으로 발표되었다.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은 각 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였다. 경기도령으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

제1조 지방비에 充用할 부과금의 課目及課率은 如左함.

1. 地稅의 부가세 本稅 백분의 5

^{1) 《}韓末近代法令資料集》 V(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2), 80~83쪽.

金泰雄, 〈1894~1910년 地方稅制의 시행과 日帝의 租稅收奪〉(서울大 碩士學位 論文, 1990).

2. 屠場稅

屠豚一頭에 대하야 금일환 도돈일두에 대하야 금이십전 도양일두에 대하야 금이십전

- 3. 시장세 放賣價格 백분의 1
- 제2조 지세의 부가세는 本稅와 동시에 此를 징수함. 부가세징수에 대하야는 國稅징수에 관한 규정을 準用함.
- 제3조 도장세는 翌月 5일내에 此를 징수함.
- 제4조 屠場主는 매월 말일을 限하고 其 屠殺數를 재무서에 신고함이 可함.
- 제5조 시장세는 開市마다 此를 징수함. 단, 상설시장에 在하야는 익월 5일내 에 此를 징수함.
- 제6조 시장세는 一市場 또는 수개 시장마다 재무서장이 認許한 시장관리인 으로 하야금 징수케 함.
- 제7조 시장관리인은 시장의 개시마다 재무서에 신고함. 단, 상설시장에 在하여는 시장 관리인은 매월 말일을 한하고 放賣가격을 재무서에 신고함이 가함.
- 제8조 제4조 및 제7조의 신고를 怠히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는 5환 이하의 벌금 또는 10일 이내의 拘留에 處함.

(《韓末近代法令資料集》VⅢ(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2). 462~463쪽).

이 규정을 일별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은 주로 시장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시장세는 개시 때마다 징수하고, 재무 서장이 認許한 시장관리인이 징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장세는 방매가격의 1/100분을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시 때마다 판매액 의 1/100분 징수는 대단히 부담되는 것이었다. 일제는 〈지방비법〉을 통해 이 전의 봉건적 수탈구조를 해체시키고 근대적 수탈구조를 형성시켰다.

시장세의 정수 등 일제의 조세수탈에 의해 일반민인들과 상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비법〉이 발표될 때부터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민중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해 시위나 소요형 태로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집단시위는 撤市 또는 시장상인들의 동맹파업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과 기울어져가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2) 순천 · 용천 양시의 시장세 반대운동

1909년 9월말부터 각 도에서 시행된〈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에 의해 시장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세 징수에 대해 가장 먼저 반발을 보인 곳은 개성 지방이었다. 개성에서는 시장세 징수를 거부하며 10월 16일부터 3일간撤廛하였으며, 더 나아가 합법적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觀察道에 시장세의 중지를 요청하려고 하였다. 각 지방에서 시장세의 징수가 실시되면서처음에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 움직임이 없었으나, 시장세의 성격에 대해 차츰 불만을 나타내는 곳이 늘어나게 되었다.

평안도 지방에서 가장 먼저 시장세 징수에 반대하여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일으킨 곳은 영변지방이었다. 영변에서는 이전에 없던 시장세를 징수하자이에 반발하여 시위를 일으켰다가 다른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일단은 모두 해산하였다. 시장세를 징수함에 따라 민심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는데, 12월 28일에는 順川에서 보다 과격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순천에서는 시장관리인 趙京垵을 무수히 구타하고 재무서와 주재소에 몰려가 시장세 징수에 항의하며 시위하자 해당 관서에서는 이를 무마하기위하여 지방세 징수를 중지한다는 약속을 하여 겨우 해산시킬 수 있었다. 다음날 영변에서는 평양과 같은 대시장에서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시장세를 징수하자 시전을 撤閉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시위의 주동자 수명을 체포하여 가두고 시장세 징수를 강행하려 하자 상민 수백 명이 경찰서를 습격하여 창문을 부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후 12월 30일 순천에서는 商務社長 羅學道의 집 앞 도로에서 순천읍내 상인 약 150명이 모여 商民會라 칭하고 商務接長 崔鳳煥과나학도를 의장으로 뽑고 金有聲을 서기로 하여 시장세를 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토의한 결과 13도의 상민이 모두 납세하기 전에는 결코 납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영변과 순천에서의 시장세 반대운동은 곧바로 다른 지방으로 파급되어 갔는데 順安・永柔・肅川・安州 등지에서도 상민들이 撤市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시장세 정납에 대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龍川 楊市의 상민들은 일제히 철시하고 시장세를 끝까지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군 재무서장과 일인주사 및 경찰서 순사 10여 명이 그 이유를 탐지하려고 시장에 도착하자 상민 300여 명이 회동하여 상업계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시장세 징수를 중지할 때까지 철시하기로 결정하고 장차 상부에까지 호소할 것이라고하였다.

시장세 징수 반대에 대한 집단시위운동은 이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 갔으며, 이에 대한 일제의 대응도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갔다. 安州郡에서는 시민이 회집하여 재무서 앞에 가서 시장세를 교섭할 때에 경찰이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총기를 발사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인 7,8명이 부상하자 시민이 더 한층 격분하여 投石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시장세 징수를 둘러싸고 과격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甑山郡 각 시장에서는 시장세 징수에 대해 인심이 크게 동요하자 징수를 담당한 관리가 각 상인에게 상업정황을 상부에 보고하여 시장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효유하므로 겨우 장이 열릴 수 있었다.

시장세 정수와 함께 각 지방에서 일어난 상인들과 일반 민인들의 시장세반대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장시나 시전의 철시였으며, 대규모 시위를 통해 민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경찰서나 재무서로 몰려가 시장세 징수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시장세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시장세 징수의 적법성과 징수방법의 개선 등을 설명하며 효유하는 한편 시장세반대 시위운동의 주동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기도하였다.

평안도 각 지방에서 시장세 반대를 위한 상인들의 집회, 경찰서나 재무서 앞에서의 집단시위, 투석전 등으로 시위가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순천지방에서 대대적인 시장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단순히 지방세에 반대하여일어난 일시적인 불만의 폭발이 아니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일본의 경제적침략과 국권 침탈에 반발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변·안주·용

천 등 평안도 각지에서의 시장세 반대시위운동은 보다 큰 규모의 시위운동 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1910년 1월 29일 순천에서 대규모의 시장세반대 시위운동이 일어 났다.3) 1월 29일 순천에서 시장세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순천재무주사 野澤辰三郎과 상인들간에 충돌이 있은 후, 상인 및 일반 민인들은 시장세 정수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투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일인 관리 등이 위협을 느끼고 군중에게 총기를 난사하므로 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운집한 군중들이 더욱 격분하여 郡衙・순사주재소・우편취급소 등과 일인이 경영하는 상점을 파괴, 방화하고 일인관리 및 상인 8명을 타살하고 수명을 부상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 때 타살당한 일본측사망자는 순천재무서 주사 野澤辰三郎・南宮燮, 우편취급소장 大野憲太郎, 농사시험장주임 森元作, 상인 木村庄太郎・矢島政吉・坂東昌一・杉本甚太郎 등 8명이다. 이외에 일제의 발포로 한국인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였다.

순천에서의 시장세 반대운동의 원인은 먼저 앞서 일어났던 평안도내 각지에서의 시장세반대 시위운동이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평양과 같은 대시장보다 먼저 시장세를 징수한 것, 시장세 징수방법과 징수과정의 불합리한 점등이 요인이었다. 여기에다 평안도 지방에 일찍부터 크게 성장해 있던 기독교의 영향도 적지않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85년부터 1910년까지의장로교 교회설립에 관한 통계를 보면 전체 설립수 687개소 가운데 평북지역이 98개소, 평남지역이 163개소, 황해지역이 103개소로 서북지방에 세워진교회는 모두 364개소에 이르고 있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 그리고 1910년 장로교회의 도별 세례교인수를 보면 전체 세례교인 39,384명가운데 평북이 7,901명, 평남이 10,842명, 황해가 4,740명으로 서북지방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23,484명을 차지하고 있었다.5 이러한 통계로만 보아도

³⁾ 金大吉, 〈1910년 平安道 順川地方의 市場稅反對運動〉(《史學研究》42, 1990). 《順川暴動事件綴》(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융희 4년 1월 31일 순천군수 박용관 이 관찰사 李軫鎬에게 보고한 보고서 제1호와 《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1일 및 《皇城新聞》, 2월 1일·2월 2일 기사 참조.

⁴⁾ 尹慶老,《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一志社, 1990), 86~87\.

⁵⁾ 尹慶老, 위의 책, 87쪽.

평안도 지방에서의 기독교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순천의 시장세 반대운동은 주로 기독교인들과 상인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지방에는 평안도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교회 가 설립되었으며, 기독교 장로파 순천지교회가 세워져 최봉환이 主宰者로 있 었고, 金聖梧·崔鎭模가 이를 도와주고, 崔學鳳이 집사로 있으면서 매주일마 다 회동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순천지교회의 신자는 名簿 에 등록된 인원이 남자 83명, 여자 78명으로 모두 161명이었다.

평안남도 경찰부장 湯淺秀富도 시장세반대는 이 사건의 표면적인 것일 뿐 근본적인 것은 기도교도들의 배일사상 고취로 인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상인들이 시장세에 반대하여 물의를 일으키자 排日派와 耶蘇教徒들이 이 틈을 타 더욱 배일사상을 고취하였기 때문에 이들 무리는 자연히 합치되어 相依相助하고, 마침내는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지금의이 사건은 시장세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排日熱이 發顯된 것으로 보아 잘못된 의견이 아닐 것이다. 또 야소교적인 냄새가 나는 배일적 학교로 지목된생도가 兇行에 관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앞의 推斷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順川暴動事件綴》, 융희 4년 2월 5일).

이와 함께 일제는 사건관련 혐의자로 체포된 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관련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독교 인들이 평안남북도의 각 시장에 격문을 돌려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자극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순천폭동사건철》에는 그 당시에 수거된 것으로 보이는 가로 66cm, 세로 23.6cm 크기의 격문 한 장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當此別有天地 各道 各郡 各市場에서 倭種子等 所為百一貰 市場貰를 月出高 月出高하는 聲에 天地盡動 近日 錢荒時代 別貰가 許多한대 小日本 倭種子나 滅 亡식히자 雜貰는 고만두라

三年某月十七日 平壤民團刺客二十三人條約

曾彌統監 長谷川 山縣有朋 殺할 事 高永禧 趙重應 朴齊純 任善俊 宋秉畯 李 容九 殺할 事

平壤民團百萬名

이 격문에서는 시장세 징수의 반대와 함께 일인 통감 소미아라 노스케(曾爾荒助)·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등과 을사오적인 朴齊純·李容九·宋 秉畯과 농상공부대신인 趙重應, 度支部대신을 지낸 高永喜, 任善準 등 친일 분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격문 한 장의 내용에서도 이 당시 배일사상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순천의 시장세 반대운동의 규모와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한 일제는 곧바로 인근 지방의 헌병과 순사 등의 병력을 출동시켜 이를 진압하게 하고,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는 관계요원을 파견하여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일제는 이 시위운동이 주로 상인과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였다고 파악하여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명단작성과 함께 범인체포에 착수하였다. 이에 2월 7일까지 주동자로 파악된 62명을 체포하였고, 이후 3 월 초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96명에 달했다.60

일제는 사건의 주동자들 가운데 범행증거가 명백한 26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가운데 최봉환이 首謀者로 지목되었고, 李炳道와 나학도·최학봉을 주동자로 파악하였다. 그 외에 살인·방화·기물파괴 등의 혐의가 확실한 자들을 조사 끝에 2월 26일 기소한 후, 재판이 진행되어 4월 30일 평양재판소에서 이들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 26명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최봉환 징역 10년 나학도 징역 10년 金京淑 징역 2년 이병도 징역 10년 趙得模 징역 3년 崔世鳳 징역 1년 최학봉 징역 7년 表永珏 징역 1년 高陽龍 징역 3년 徐福用 징역 15년 崔相殷 笞 1백 朴應銓 태 1백 崔南俊 징역 15년 李基永 태 1백 洪鳳奎 징역 10월 楊召史 무죄 林召史 무죄 李應鉉 징역 1년 金景八 태 1백 柳永贊 태 1백 金尚鎬 태 1백 김윤모 종신 李裕典 태 1백 韓鳳淳 태1백 表昌祫 징역 2년 羅仁坤 징역 1년

(《順川暴動事件綴》, 융희 4년 4월 30일 · 4월 5일).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모자 26명을 구속 기소하여 24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 하면서⁷⁾ 순천의 시장세반대 시위운동과 같은 시위나 소요가 재

⁶⁾ 金大吉, 앞의 글, 182~184쪽에 62명에 대한 체포월일과 죄목내용 참조. 《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2일.

발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었다.

일제는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深因으로 시장세의 불공평에 대한 불평, 시장세의 오해와 疑懼, 순천 재무주사 野澤에 대한 쌓이고 쌓인 개인적 감 정, 배일사상의 팽배, 안주・영변지역에서의 시위영향 등을 들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주동자들의 선동, 破帽・발포에 대한 도발적 행동, 피를 보고난 후의 격앙, 多衆을 믿는 심리작용, 군중들이 우발적으로 뛰쳐나온 것 등이었 다고 파악하였다.

순천에서 대대적인 시장세 반대운동이 일어난 후 2월 2일에는 용천의 양시에서 대규모의 시장세 거납운동이 일어났다.⁸⁾ 용천에서는 이미 1월 중순에 시장세 징수에 반대하여 철시로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었는바 2월에 들어서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모여 시위를 일으켰다.

이 때 발생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보면 용암포에서 약 20리 되는 장시에서 시장세를 반대하여 시장을 열지 않고 다수 시민이 회집하여 재무서원을 폭행하려 한다는 정보가 용암포 分署에 도착하자 同署에서는 이 곳 주재헌병과 함께 출동하여 해산시키고 주모자 6, 70명을 체포하였다. 이에 시민들이 크게 격앙하여 다음날 오후 3시경에 500여 명이 모여 용암포분서에 이르러 무죄한 사람을 체포했다고 하자 재무서에서는 군중들을 村邊으로 퇴거케 한 후 청원대표자 4명을 선출케 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지을 것을 약속하자 상민들이 일시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몰 후에 시민 약 200여 명이 다시부근 촌락에 회집하여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신의주 헌병대에 응원을 요청하여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용천 양시에서의 시위가 일어난 후 헌병과 경찰이 용천과 용암포 부근을 엄중히 경계하는 가운데에서도 2월 4일 오후 4시 경 인민 약 400명이 다시 시장세문제를 호소하고자 용암포경찰서 부근에 이르렀다가 그 가운데 3명이체포되고 나머지는 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10)

⁷⁾ 순천의 시장세반대운동 주동자들에 대한 기소내용 및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金大吉, 위의 글, 189~192쪽 참조.

⁸⁾ 金大吉, 〈1910년 평안도지방의 市場稅 반대운동〉(《中央史論》 7, 1991).

^{9)《}大韓每日申報》·《皇城新聞》·《大韓民報》, 1910년 2월 5일. 《京鄉新聞》, 1910년 2월 11일.

용천 양시의 시장세반대 시위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된 사람은 13명 이었다. 그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은 다음과 같다. 金柱宗(19세) · 金永杰(45세, 상업) · 李根榮(33세, 상업) · 金基饗(26세, 농업) · 李成學(36세, 보부상) · 張竹燮(26세)은 양 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趙鳳國(24세)은 의주인이었고, 宋子賢 · 黃菊補(保) · 黃菊萬 · 李正潢 · 鄭承錄은 양시의 商務同事 회사원이었다.11)

이들 가운데 송자현·황국보는 1908년 2월 경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용천 양시에 설립된 상무동사의 주요 인물이었고, 기독교인으로서 新民會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기도 하였다.¹²⁾ 이들은 9일 주모자로 지목되 어 일본헌병과 경찰관리 20여 명이 호송하는 가운데 의주로 압송되었다.

이후에도 시위와 관련된 자들이 계속 체포되었는바 용천 양시에서는 평양 경찰서장 國友 경시 이하 경찰관 23명과 헌병분견대장 安藤 이하 헌병 28명 이 주재하여 다수 시민을 민요선동자라 칭하고 2월 14일까지 56명을 체포하 였다.¹³⁾

3월에 들어서면서 순천 시장세 반대운동으로 체포된 자는 96명에 달하게 되었다. 14) 순천지방의 시장은 3월에 들어 차츰 개시하게 되었으나 용천의 경우는 3월 6일까지도 시장이 개설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용천 양시사건에 관련된 주동자 1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4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고, 4월 1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 반을 선고받은 자가 6명, 1년을 선고받은 자가 4명, 10월을 선고받은 자가 3명이었다. 15)

평안도 지방에서의 시장세 반대운동에 관련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체포되고, 헌병 순사들의 경계와 감시가 강화되자 시위는 대체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다. 肅川에서는 7일이 개시일이었는데 순천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주재한 헌병, 순사들이

^{10) 《}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6일.

^{11) 《}皇城新聞》, 1910년 2월 13일,

¹²⁾ 尹慶老. 앞의 책. 101~102쪽.

^{13) 《}皇城新聞》, 1910년 2월 16일.

^{14) 《}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2일.

^{15)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16일.

엄중히 경계하여 겨우 개시일을 무사히 경과할 수 있었다. 용천 양시에서는 철시하고 체포된 14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場外에서 소수의 상인들이 매매를 하였지만 관현들은 장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16)

지방세법의 실시와 함께 평안도 각 지방에서 시장세 반대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며, 이 가운데 순천과 용천 양시에서 대규모의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시장세 반대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이에 대한 일제의 대응도 처음과는 달리 점차 강경대응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3) 시장세 반대운동의 전국적 확산

순천·용천·영변·안주 등지에서 거세게 일어난 시장세 거납운동은 곧바로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에 대해 일제는 헌병과 순사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한편 또다른 소요발생에 대해 엄중히 경계하면서 개시에 대한 효유와 시장세 징수를 강행하였다.

順安에서는 시장세 반대운동과 반일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시위운 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경한 진압을 위해 헌병 상등병 4명과 보조원 8명으로 헌병대 임시출장소를 개설하고 있었다. 숙천군 재무서에서는 순천군의 소식을 듣고 그 고을에도 그러한 사태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시장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시민의 행동만 엄밀히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정도였다.17)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월 중순 경에는 시장세 정수를 둘러 싸고 각 지방에서는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중순 경 기사에는 평안도내 많은 지방에서의 場稅拒納 시위운동에 대해 싣고 있는데 선천·박천·증산 등지에서도 시장세 징수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북 泰川 지방에서도 상민들이 시장세 징수에 반대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시장관리인에게 "시장관리인 된 한국인아 너의 職을 사직하라. 다만 죽음으로써 그 직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관리인 됨이 가하니

^{16) 《}皇城新聞》, 1910년 2월 9일.

^{17) 《}京鄉新聞》, 1910년 2월 11일.

라. 관리인의 부모처자 된 자도 이를 생각하라"는 요구를 외치면서 시위에 들어가자, 시장관리인 중에 사임하는 자도 있었다. 태천에서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일제는 안주분견소에서 헌병 1명과 보조원 6명을 파송하여 또다른 시위에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하였다.18)

시장세가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인들에게 불만을 사게 된 원인은 징수과정에서의 중복 과세 등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기사는 그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장세 사건으로 각 지방 인민이 苦따呼號함은 人所共知어니와 원래 此 시장세는 重複의 稅를 課합이니 즉 시장 매매는 생산자 소비자의 매매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함이 多하야 一物品으로 數市場에 轉輾하거늘 此를 每市 課稅하면 즉 一物品에 대하여 甲시장에서도 과세하고 又其물품이 乙시장에 入하면 乙시장에서도 과세하고 又丙시장에 入하면 丙시장에서도 과세하고 又丁시장에 入하면 丁시장에서도 과세하는지라. 如斯不已하면 필경 민간에 大反抗이 起하리라고 당국에서도 우려한다더라(《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23일).

즉 한 가지의 물품을 가지고 여러 곳의 시장을 순회하는 상인의 경우 가는 곳마다 시장세를 징수당하고 있어서 큰 반대시위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는 시장세 징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방세의 징수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우선 이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시장세의 징수방법도 그 세액과 부과방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대개 시장세 반대시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응급조치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시장세 징수방법의 변경과 개시에 대한 효유, 그리고 삼엄한 경계하에서의 징수 등으로 시장세를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장세거납운동의 여파는 각 도로 파급되어 거의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충청도 회인군 동면 車嶺里에서는 시장세 문제로 200여 명의 민인이 회집 하자 회인과 보은의 헌병분견소에서 헌병과 경찰 등을 파견하여 이를 진압

^{18) 《}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20일.

하였다.¹⁹⁾ 강원도에서도 시장세와 합방 등의 소문이 팽배해 혹시 시위나 폭 동이 있을까 전전궁궁하고 있다고 하여 시장세문제로 인한 시위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전북 지방에서도 시장세 징수로 동요의 움직임이 보이자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헌병 및 경찰, 재무관리 등을 동원하여 다방면으로 說諭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무마시키고 있었다.²¹⁾ 그리고 순천의 시장세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전 전라도 지역의 負商이 평안도 지방을 왕래하면서 순천의 상인들에게 시장세의 불합리함을 고취시켜 배일사상이 더욱 커지고 나아가서는 징세에 반대한다는 연판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²²⁾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전라도 지역에서도 시장세 징수에 대한 반발이 심각했었음을 알수 있다.

경기도 강화군에서는 시장세로 민인들 사이에 불평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함경도 惠山鎭 및 端川에서도 시장세로 민인들의 반항이 자못 강하였다. 단천 派道面 南里市에서는 시장세 문제가 생긴 이후로 市況이적막해질 정도였으며, 安岳 椒井시장에서는 2월 이래 장이 5회 열렸지만 계속 납세를 거부하였고, 谷山邑場에서도 불평의 소리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였다.23)

함경도 지방은 3월 초까지만 해도 시장세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제의 설득과 무마로 겨우 평온을 되찾고 있었는데,²⁴⁾ 4월에 들어서는 이 지방에서도 시장세 납부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단계에까지이르렀다.

한편 安州 지방에서는 시장세반대의 중요 혐의자로 수명이 체포되어 투옥 된 이유로 이 지역 상민들은 이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시장을 열지 않기로 하고 市廛을 철폐하였다. 이후 3월 3일에 다시 개시하였지만 行商들이 모여

^{19) 《}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23일.

^{20) 《}京鄉新聞》, 1910년 3월 4일.

^{21) 《}皇城新聞》, 1910년 2월 27일.

^{22) 《}順川暴動事件綴》, 평안남도 觀察道 主事 江阪正功이 관찰사 李軫鎬에게 보고 한 내용.

^{23)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6일.

^{24) 《}皇城新聞》, 1910년 3월 9일.《京鄉新聞》, 1910년 3월 18일.

들지 않고 坐商들 역시 평소의 1/3정도만 모이는데 불과하였는데 안주의 재무서 관리는 경계를 엄중히 한 후 정세를 실시하였지만 5원 5전을 거둬 들이는데 그칠 정도였다.²⁵⁾

황해도 황주에서는 시장세 징수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 장시개설이 여의치 않자 곡물의 매매를 거의 대부분 시장 바깥 도로변이나 혹은 촌락에서 행함 으로써 시황이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읍내 居民과 客主店 등은 식료품의 결핍으로 곤란이 극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방비법》이 실시된 이후로 각 지방의 장시에서는 시장세 정수에 반대하여 시위가 빈번하게 전개되었고, 撤市하는 곳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物貨의 유통도 원활하지 못하여 지방 장시가 쇠퇴하게 되자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지방장시가 지역 주민들의 生理에 매우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시장의 개시를 회유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의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세 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인 혹은 일반인들의 시위운동에 대해 일본도 헌병, 경찰 등으로 강경하게 진압 또는 엄중히 경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병행하여 한발 물러나 이들을 설득 또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1909년 12월부터 1910년 4월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서 일어난 시장세 반대운동은 일제의 강경한 대응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국권이 침탈되어 가는 때에 경제적 자주권수호와 국권수호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운동을 통해 일반 민중들은 그들의 이익과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음도 확인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보다 큰 힘의 결집으로 나타나 일제하에서의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金大吉〉

^{25) 《}皇城新聞》, 1910년 3월 12일.

3.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1)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배경

1904년 2월 10일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23일에 이른바 韓日議定書를 체결,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對韓侵略政策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樞密院議長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3월 17일 서둘러 來韓, 10일 간 체류하며 韓國政情을 검토하였다.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이토에게〈對韓私見概要〉를 제출하였다. 하야시는 일본 농민이 한국에서 토지소유권을 확장하려고 건의하는 자가 많지만, 토지소유권을 허용할 경우에실제로는 외국자본가가 농단하게 될지도 모르므로, 다만 경작 기타의 地上權의 자유를 획득하게 하는 방침을 취하여 농사에 관한 일본의 이권을 부식하고, 한국의 생산력을 增益하는 편이 적의하며, 혹은 한 개인의 이름으로 황무지의 개척권을 얻을 수 있는 好機가 있으면 실행하도록 하고, 그 경영은일반 私人만이 專任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정한 방침에 의해 이익을 일반에게 미치도록 계획할 것을 이토에게 건의하였다.

이토는 하야시의 〈대한사견개요〉를 대체로 채택하여, 대한정책과 그 실천 방안을 일본 정부에 건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對韓施設綱領〉 속에 拓殖方案을 확정하고,〈對韓方針〉・〈對韓施設綱領〉・〈對韓施設細目〉 등의 한국 경영방안을 마련, 1904년 5월 말에 閣議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얻 었다.

《대한방침》은 한국에서 정치·군사적으로 보호의 實權을 거두고 경제적으로 일본의 이권을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이 《대한방침》은 한국을 보호국화는 물론 장차 병탄하겠다는 전제하에, 당면의 급무로서 정치·군사적으로 실질상 예속관계를 성립시키고, 경제상 이권을 탈취하여 식민지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시설강령》·《대한시설세목》은 일제가 국방·

외교·재정·교통·통신·척식 등에서 실천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일제는 대한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일제가 탈취하려 한 중요한 이권의 하나였다.1) 그들은 한국에서 일본인 기업으로 가장 유망한 것은 농사라고 단정하였다. 일본의 과잉 인구를이식시킬 수 있는 땅을 얻고, 부족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것으로 기대하였다. 일본 농가를 위해 한국을 개방시키는 수단으로 두 가지대책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일본인 개인의 명의로 한국 정부로부터 官有 황무지를 경작 및 목축할 수 있는 특허나 위탁을 받고, 그것을 일본 정부의 관리하에 일본인이 경영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인 거류지에서 1里 이외일지라도 民有地를 경작 또는 목축 등의 목적으로 일본인이 매매・임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內地를 일인에게 개방시키고 그들의 토지소유를 인정케 하려는 것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시설강령〉에 의거,〈대한시설세목〉을 작성해서 일본 공사 하야시에게 훈령하였는데, 그 세목 제7항에서 官有 황무지의 경작 및 목축권은 한 개인의 명의로 소득하여 상당한 자본가로 하여금 실지 경영하 게 할 것이고, 민유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않고 실 제 매매 임대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다.

척식계획의 대강을 밝힌 〈대한시설강령〉은 한국을 그들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로 확대하고 공업생산품의 판매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보다 본격화한 것이며, 일인을 한국에 식민하여 과밀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일본 農商務省은 이미 3월까지 3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농업과 토지 전반에 척식조건을 조사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상무성은 外務 省과 주한공사 하야시에게 전달한〈韓國農業調査의 件〉에서 척식상 유리한 점과 구체적인 척식계획을 제시하였다. 한국에는 아직 경작하지 않지만 경작

¹⁾ 尹炳奭,〈日本人의 荒蕪地開拓權 要求에 對하여-1904年 長森名儀의 委任契約 企圖를 中心으로-〉(《歷史學報》22, 1964;《近代 韓國民族運動의 思潮》, 1996, 集文堂).

가능한 141만 정보의 토지가 있고, 농민 700만이 농사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일본 이민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인구밀도가 일본・중국보다 적으므로 개척의 여지가 많고, 풍토나 산수가 일본과 유사하여 이민들이 곤란을 느낄 바 없으며, 일본인은 건강・지능・자본에서 한국인 보다 우수하므로, 순종한 한국인을 이용하고 편달하면 사업에 더욱 便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토질도 米・麥・豆・菽 등의 곡물 생산에 적합하여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적당하고, 건조한 기후와 경사지를 이용하면 일본보다 더좋은 綿・麻 등을 생산할 수 있으며, 地價 또한 저렴하여 군사상 필요한 牛馬의 축산에도 용이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식민지경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한국의 未耕地 개척에서 增收되는 地租의 수입 등으로 현지 염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2)

2) 황무지개척권의 요구

일본 정부는 1904년 6월 6일에 주한공사 하야시를 통하여, 한국 外部에 황무지개척권을 일본인에게 양여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大藏省 官房長을 역임한 나가모리 토키치로(長森藤吉郎)는 이미 密令을 받고 1월부터 한국에 와서 對韓經營方案을 조사・연구하고, 한국 宮內府와 극비리에 교섭하여 예비 공작을 진행하여 왔다. 나가모리는 하야시와 협의하에 1904년 1월 하순경에 淸安君 李載純과 회견하고, 한국 황실의 위엄을 영원히 保維하고 王基를 萬世에 확립하려면 왕실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은 전국 황무지를 개간하여 궁중에서 收稅하는 재원으로 만들고, 酒・煙草・鹽・鑛物 등을 전매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황무지개척권과 아울러 술・연초・광물등의 전매 위임도 일본에 크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위임계약안을 작성하여 교섭을 추진시키려 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않고, 이재순이 3월 2일 急逝하였으므로 더 진전되지는 못했다. 나가모리는 3월에 議政府參贊 權重奭에게 황무지개척권의 위임계약안을 제시하고 비밀

²⁾ 尹炳奭, 〈일제의 荒蕪地開拓權 요구와 한국민의 투쟁〉, 위의 책, 79~89쪽.

로 체결하자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宮內府大臣 閔丙奭의 반대로 계약은 체결 되지 못했다.

하야시는 5월에 이르러 외무대신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에게 황무지개 척권 위임계약을 비밀리에 교섭하는 것이 時宜에 맞지 않다고 건의하고 직 접 자신이 나섰다. 자신이 수정한 계약안을 가지고 직접 한국의 몇몇 대신들 을 만나 나가모리를 소개하고, 계약안을 설명하였다.³⁾ 그리고 외무대신의 훈 령에 의해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는 공문과 위임계약안을 6일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하야시는 공문에서 개척권 요구자의 명의는 나가모리로 하고, 자신은 공사의 입장에서 소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요구가 일본의 對韓拓殖政策의 일환임을 숨기고, 나가모리 개인 자본으로 결행하려고 신청한 것으로 내세웠다. 이를 자신이 추진하는 것은 황무지개척이 부국증진의 제1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국민이 버려두고 있으며, 더욱이 개척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구비하지 못한 처지이므로, 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4) 하야시는 고종에게, 황무지개척은 경지면적의 확대와 곡식의 증산, 국고수입의증수, 곡물의 외국수출 증가, 유민의 생업과 양민의 부유를 성취할 것이라고 아뢰었다.5)

일본은 겉으로는 모든 황무지를 궁내부 御供院에 편입시키는 전제 아래, 御供院卿이 국왕의 명에 따라 나가모리에게 개척권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 려고 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미 1904년 5월 19일에 황무지 등의 개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 소속의 어공원을 설립하였다. 앞서 5월 15일에 奉常司提調 鄭日永은 고종에게 상소하여, 황무지개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외국의예를 본받아 하나의 院을 설치하여 황실에 소속시키고, 정밀한 기계와 새로운 耕作法을 다른 나라에서 본받아 灌漑하고 땅을 개척해 나간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근원이 될 것이라고 건의한 바 있었다.6) 이를 받아들여 어공원

³⁾ 尹炳奭, 위의 책, 89~91·100쪽.

⁴⁾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970, 117\.

⁵⁾ 尹炳奭, 앞의 책, 94쪽.

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日本農具株式會社 사장 나가모리가 주한일본전권공사 하야시를 통하여 6일에 외부에 제출한 황무지개척권 위임계약안은, 제7조의 "본 계약은 경영에 착수하던 각 부에 대해 경영완성 후 50년간을 유효로 하되, 기한에 이르러 상호협의로 다시 계속 행할 수 있을 것"등 총 10개 조로 되어 있다.7)이 계약안은 한국의 산림·천택·진황지의 개척권을 50년간 장기 대부하는 特許契約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영토의 1/4이나 되는 황무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히 일본에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 계약안을 통해 일본인을 대량 이주시키고 한국을 그들의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50년 후에 반환이란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고 영구 점유를 도모하였다. 계약안에서 50년간 借貸라고조건을 명시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한국 정부나 국민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추측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일의정서의 체결에 협력한 친일내각이었지만, 乙未事變 후 배일감정이 심화된 고종이 정부를 인도하고, 국민들은 한일의정서 늑결에 대해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토의 요구나 다름없는 황무지의 영구 점유를 요구할 생각은 갖지 못하였다.

둘째 토지소유권을 일본인이 장래 독점하여 인정받으려는 정략적 고려를 하였다. 일본은 내정을 간섭할 수는 있었지만 아직 외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일본이 한국의 토지소유권을 인정받는 계약을 맺을 경우, 淸·英·美 등도 기회균등을 내세워 한국의 토지소유권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장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욕을 가진 일본은 외국의 세력확장 기회를 미리 차단하려 기도하였다.

요컨대, 이 위임계약안은 한국의 황무지경영권을 탈취하여 그들의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로 만들려는 획책이며, 한국의 토지를 점유한 다음에 소유권을 침탈하려던 의도였다. 개척권 요구자를 나가모리의 개인 명의로 한 것은 물 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속히 처리하려는 '신중한 思慮'에서 나온 편의상 조치

^{6) 《}高宗實錄》, 광무 8년 5월 15일, 奉常司提調鄭日永疏略.

^{7)《}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17~120\.

에 불과했다.

3) 한국민의 반대운동

(1) 언론·상소 투쟁

1904년 6월 6일에 황무지개척권의 요구 공문과 그 위임계약안을 받은 외부대신 李夏榮은 궁내부에 통고하고 의정부회의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고종에게 進聞하였다. 일본공사와 나가모리에게 이미 상세한 설명을 들은 대신들도 있었지만, 의정부대신 중에는 외부대신에게 이 제안을 즉석에서 거절하지않고 접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반대자도 있었다. 고종은 자신이 직접 속결하지 않고 의정부회의에 미루었다.8)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비밀 누설을 방지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하야시는 황무지개척권 요구가 한국인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예상하고, 이미 6월 1일에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외교상 중요 안건은 정부 내외에서 비밀을 절대 엄수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문제의 대소를 막론하고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그것은 비밀리에 정부만을 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셈이었다. 外部는 7일에 內部에게, 앞으로 기밀안건은 공문의 封皮 및 본문의 號數 위에 '秘' 자를 쓸 것이니, 특별 관리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문과 계약안은 6월 중순에 이르러 일부에 알려졌고, 이에 유학 金箕祐·진사 鄭東時 등이 동지를 규합하여 倉洞 등지에 疏廳을 설치하고, 23명이 連署한 排日通文을 전국 13도에 발포하여, 진황지개척 요청을 인허하면 나라의 강토를 다시 회복할 여지가 없으니,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동심하여 復讎保土하자고 역설하였다.10)

⁸⁾ 尹炳奭, 앞의 책, 96~102쪽.

^{9)《}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07·122\. 《皇城新聞》, 1904년 6월 8일, 잠보〈機密禁漏〉,

¹⁰⁾ 尹炳奭, 앞의 책, 102쪽.

6월 17일에 《漢城新報》가, 일본대리공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는 한국의 산림·천택과 陳荒曠地와 菑田을 합동하여 일본인이 改良作農케 할 것을 외부에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튿날에 《皇城新聞》이 일인 나가모리가 주관하여 관유 · 민유 이외에 원야·진황지·산림을 개탁하는데 기한은 50년이라고 보도하였다.11)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 사실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민은 거족적 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朝臣과 儒生들의 반대 상소가 빗발치듯 올라갔고, 《황성신문》등 언론이 발맞추어 논설과 기사로서 일본의 요구를 규탄, 반대 하였다.

6월 20일 하오에 열린 의정부회의에서 나가모리가 요청한 산림·천택·원 야·진황지의 개척안이 제의되었다. 이날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개척안을 설 명한 하기와라 공사는 김기우를 경무청에 연행하여 심사하라고 요청하였다. 22일에도 양국 친교를 교란하려는 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외부에 추궁하였다.12)

22일에는 종2품 李相卨이 상소하여,13) 황무지를 부당하게 외국인에게 일임해서 재원을 막는 것은 백성에게는 여유가 없고 국가에는 餘蓄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대신들과 황제는 나가모리의 요구를 절대 인허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황성신문》은 23일에 나가모리가 宮內府 御供院 소관의 산림·천택 및 기타 황무지 개척에 관하여 特許合同을 요구한 안건을요약 게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1. 한국 궁내부는 전국 13도의 官有 · 民有 외에 산림 · 천택 · 陳荒廢地의 개 척을 일본인 나가모리에게 특허할 것.
- 2. 나가모리는 해당 특허에 기인하여 자기의 계산으로써 前條의 황무지를 개 척하되, 開墾日로 起하여 만 5개년 후에야 세금을 비로소 궁내부로 납부 할 것.

[《]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46~147쪽.

^{11) 《}皇城新聞》, 1904년 6월 18일, 잡보〈照謄漢報〉,

^{12) 《}皇城新聞》, 1904년 6월 21일, 잡보〈政府議案〉. 《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53等.

^{13) 《}皇城新聞》, 1904년 6월 23일, 잡보〈李氏上疏〉・28일, 잡보〈李氏疏本〉.

- 3. 합동 기한은 50개년으로 정하되. 嗣後에 다시 續約함을 得할 것.
- 4. 궁내부는 계약자 이외에 제3자에게 이 조약과 저촉하는 특허를 與치 못할 것(《皇城新聞》, 1904년 6월 23일, 잡보〈要求條件〉).

이에 국민들은 비로소 나가모리의 황무지개척안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고종의 칙명으로 23일에 중추원은 회의를 열었다. 중추원은 외부에 조회하여 나가모리의 진황지 개척 청구서의 謄本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청하였다.14)

《황성신문》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연4회에 걸쳐서〈韓日國交之憾情所由〉란 논설을 게재하여,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원인은 일본의 대한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역설하였다.15)

이와 같이 한국민의 반대여론이 격화되자, 일본은 對韓經營을 재검토하였다. 일본 進步黨은 6월 중순에 협의회를 열고 韓國經營案 10여 조에 대하여협의한 후에 조사회 결의안의 발표를 정지하고, 다시 근본적 방침에 대하여정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16)

紳士들은 상소나 통문을 통해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황무지를 한국민에게 개척하도록 허가하여, 외국인의 요구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6월 25일에 신사 수백 인이 疏廳을 설치하고 진황지를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말고 우리 나라 관민이 합력 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였다. 疏首에는 정2품 朴箕陽이 선출되고, 남북촌의 뜻있는 대관과 신사들도 뜻을 모아 참여하였다.17) 이날 前議官 洪肯燮도 중추원에 獻議하여, 진황지를 모두 우리 인민에게 특허하여 재산을 모아 起墾케 하면, 감히 누가청구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황무지의 개척과 경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通政 朴宜鉉 등은 중추원에 獻議하여,18) 國計의 8,90%나 되는 산림・원야・진황지를 하루아침에 일인에게 許與하면 한 주먹의 산과 한 갈래의 물

^{14) 《}皇城新聞》, 1904년 6월 25일, 잡보〈請示請書〉.

^{15)《}皇城新聞》, 1904년 6월 24~28일, 논설〈韓日國交之感情所由〉.

^{16) 《}皇城新聞》. 1904년 6월 24일. 잡보〈對韓經營의 調查〉.

^{17) 《}皇城新聞》, 1904년 6월 25일, 잡보〈疏首延請〉・27일, 잡보〈勿字誤脫〉・28 일, 잡보〈非李乃朴〉.

^{18) 《}皇城新聞》、1904년 25・27・28일、 잡보〈樞院獻議〉、

도 모두 남의 범위에 들어가, 무고한 인민은 의식주를 잃고 재원을 빼앗기고 땔감과 灌漑의 이익도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황무지 요구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발전될 조짐이 보이자, 일본공사는 27일에 외부에 공문을 보내, '무지한 무리'들이 通文·上書 또는 匿名書를 서울과 지방에 유포하여 비밀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만약 힘써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 군대 및 경찰관이 발견되는대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위협하였다.19)

27일 오후 3시에 정부회의에서 황무지개척의 인준 여부를 논의하였다. 조약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였으므로, 나가모리의 요구안을 일본공사에게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다.²⁰⁾ 궁내부는 거절 이유서를 작성하여 외부에 이송하고, 외부가 일본공사에게 계약서를 돌려보내고 결단코 인준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로 하였다.²¹⁾ 외부대신은 궁내부가 작성한 공문과 6월 6일에 일본공사가 제출한 계약안을 29일에 일본공사관에 반송하였다.

궁내부가 황무지개척권 양여 요청을 반대한 이유는 4가지였다. 첫째 궁내부는 황무지개척사무를 강구하기 위해 어공원을 특설했는데 사업을 착수하기도 전에 외국인에게 양여하는 것은 원의 설립 본의에 어긋나고, 둘째 한국의 원야·산립은 황무지라 하더라도 이미 國稅帳簿에 올라 있고, 또 대부분이 민유이므로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위정의 본의가 아니며, 셋째 한국의 토지는 관유 아니면 민유이고 민유 아니면 관유이므로, 이외에 어떤 공한지도 없으므로 양여할 수 없고, 넷째는 나라 안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여 이를 안정시킬 수가 없으므로 결단코 인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2)

그러나 일본은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일본공사는 29일에 즉시 한국의 거절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자본과 기술을 구비하지 못한 한국은 개척을 일본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차 인준을 강요하였다.²³⁾ 일본공사는 고종을 직접 알현하여 승낙받겠다고 요

^{19)《}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67零.

^{20) 《}皇城新聞》、1904년 6월 28일、 잡보〈政府會議件〉・29일、 잡보〈決議繳環〉、

^{21) 《}宮內府去來案》, 광무 8년 6월 28 · 29일.

^{22) 《}皇城新聞》, 1904년 7월 1일, 잡보〈宮府照復〉. 尹炳奭, 앞의 책, 106~107쪽.

청하고, 일본이 대한정책을 變改하여 한국이 후회하는 경우가 되지 않게, 깊이 형촉하길 바란다고 위협하였다.²⁴⁾

한국 정부와 일본공사관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국민들의 반대운 동은 더욱 치열해졌다. 29일에는 幼學 許低・李承萬 등이 정부에 上書하여, "나가모리가 산림・천택・원야의 토지를 借與하기를 요구하나, 차여란 속이고 유혹하여 탈취하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양허하면 2천만 생령이 魚肉의 화를 면치 못하고 5백년 종사가 稅泊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紳士疏廳에서도 前秘書丞 尹秉・前郡守 洪弼周・前承旨 李範昌・前主事 李沂 등이 선언서를 발포하여,25) 황무지를 외인에 인허하지 말고 어공원을 혁파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개척 種植케 하도록 처분하라고 촉구하였다.

조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궁내부는 나가모리가 요청한 계약서를 6월 30일에 외부에 되돌려 보냈다. 외부는 즉시 일본공사관에 繳交하고 황무지는 우리 나라가 맡아서 개척, 척식할 것이며 결코 외국인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하기와라는 바로 황무지개척 계약안을 외부에 환송하였다. 그는 계약이 한국에 이익을 주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약안을 다시 살펴보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이 소청을 설치하여 통문하고 伏閣上疏하며 연명하여 헌의하는 것이 시국을 그르치고 교린을 어긋나게 하는데, 한국 정부가 엄히 징벌하지 않으면, 일본 군대나 경찰이 붙잡아 懲治하겠다고 협박하였다.26)

이에 대해 외부는 7월 1일에 대리공사에게 照覆하여, 일본의 군대나 경찰 관이 상서·통문 등의 기초자나 발송자 및 집회하는 자를 발견되는대로 처 분하겠다고 제의한 것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민들이 중외에서 선동하 여 소요와 와전이 야기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조사하여 금지할 것이라고 표 명하였다.²⁷⁾ 《황성신문》도 이에 동조하여 일본공사가 일본 군대와 경찰관을

^{23)《}舊韓國外交文書》, 7(日案 7), 172~177\.

^{24) 《}日本公使館記錄》, 1904年 未耕地經營 101丁.

^{25) 《}皇城新聞》、1904년 6월 29일、 잡보〈紳士宣言〉・〈許李上告〉、

^{26)《}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78~182等. 《皇城新聞》, 1904년 7월 2일, 잡보〈日照繳日〉및 4일, 잡보〈繳照還投〉・〈日使請陛〉.

개입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판하였다. 산림·천택의 사안은 전국 인민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권을 요구하는대로 타국에 넘겨주었으므로, 국민들이 정부에 경고한 것인데, 무엇이 교린과 시국을 그르쳤느냐고 반박하였다. 일본이 위협적 수단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다면, 한국민의 격앙뿐만 아니라 列國 사람들이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²⁸⁾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언론을 무마하려고 나섰다. 즉 하기와라는 7월 3일에 황무지개척사안의 辨明書 12조를 열거하여 외부에 보내 한국 정부를 설득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른바〈辯妄書〉를 각 신문에도 게재하여, 일본의 개척요구는 조금도 한국 疆土를 침해하는 것이 없고, 한국에 긴급하고 유리한 과제라는 점을 선전하였다. 29) 《황성신문》은 이에 반대하고, 진황·개척을 우리 인민에게 인허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7일부터 연 3일 동안〈辨論日公使之辨論〉이란 논설을 게재하여, 하기와라가 외부와 각국의 주한공관에 보낸 황무지개척사안의 변명서 12조 를 조목별로 검토하고 반론을 개진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이익에 주력하려 면, 마땅히 우리 정부에 충고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개척사업에 착수하 게 하고, 일본인은 우리에게 雇聘하여 옆에서 開導하고 권고하여, 황무지의 모든 개척을 돕는다면 이것이 정말 교린의 敦誼라고 역설하였다.30)

정부는 일본의 교활한 수법과 강경책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외부대신은 5일에 일본공사에게 공문을 보내, 황무지 개척의 일은 자기가 정부대표로서 교섭하는 처지에 있으니, 대리공사는 본인과 和衷商辦하는 것이 마땅하고, 고종을 알현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화충상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을 구실로 협상을 계속하자고 주장하였다. 화충상변하자는 것은 자기들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전제 아래 한 말이라고 강변하면서, 계약안의 세부 문구를 협상하자고 요청하였다. 외부는

^{27)《}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67·181\.

^{28) 《}皇城新聞》, 1904년 7월 2일, 논설〈辨日公使照會之說〉,

^{29) 《}皇城新聞》, 1904년 7월 5일, 잡보〈陳荒辨條〉・7일, 논설〈辨論日公使之辨論〉. 尹炳奭, 앞의 책, 108~109쪽.

^{30) 《}皇城新聞》, 1904년 7월 7~9일, 논설〈辨論日公使之辨論〉.

계약안을 승낙한다는 원칙하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위임계약안에 대해서는 전혀 승인할 리가 없다고 설명하였다.31)

이 날 일본 경찰서가 통문 주모자 呂永昭 등 3인과 소청의 여러 사람을 붙잡아 가서, 1차 신문 후 한국 경무청에 이송하자, 《황성신문》은 7월 6일자 논설에서 이 사건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일본이 전국의 토지 이권을 강제로 점유하고 영토를 침탈하려고 획책하므로 전국민이 激昂奮鬱하는 것인데, 일 본이 위력으로 압제하고 붙잡아 가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 하였다.³²⁾

金星斗 등 3인은 주한 각국공관에 통문을 보내 일본의 황무지 요구를 비판하였다. 일제는 김성두 등이 인심을 騷動하고 양국의 交誼를 손상했다고 붙잡아 한국 경무청으로 연행하였다. 그리고 하기와라가 6일에 외부에 조회하여, 법률에 의해 엄징하라고 요구하였다.33)

7일에는 奉常司副提調 李舜範 등이 상소하였다.34) 그는 "우리 나라는 산림·천택·원야·황무지가 10분의 8~9이며, 나라와 백성들의 소유로서 原田帳에 등록된 토지는 10분의 1~2밖에 되지 않는데, 10분의 8~9를 남에게 넘겨주면, 祖宗의 능침과 백성들의 묘소가 일인에게 넘겨준 곳에 있게 되고, 비단·麻·五穀·金·銀·銅·鐵·새와 짐승·물고기·초목·갈대·대나무 등나라의 정규적인 稅와 백성들의 생활 밑천이 될만한 것들이 모두 일인의 財富 원천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일본이 개척권을 청구한 것은 "국내의 앞잡이들이 초래한 것이며, 그들의 강한 것이 두려워 酬應하는 것도 앞잡이의 위협 때문이며, 대궐에서 함부로 접견을 요청하며 음흉한 모략과은밀한 계책을 꾸미는 것들은 모두 賣國하여 자기를 살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그는 "국토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농상공부가 관할하게 해서, 개척 채취 증식하게 할 것이며, 인민과 나라에 이로운 방책을 세밀하게 강구해서, 田野가 황무지로 되지 않게 하고 백성들이 재부를 쌓게 한다

³¹⁾ 윤병석, 앞의 책, 109~110쪽.

^{32) 《}皇城新聞》, 1904년 7월 6일, 논설.

^{33) 《}皇城新聞》, 1904년 7월 7일, 잡보〈請懲通文者〉.

^{34) 《}皇城新聞》, 1904년 7월 7일, 잡보〈奉常司副提調李舜範等上疏〉.

면, 저들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7월 8일에는 前都事 李恒珪가 "한 조각의 땅이라도 외국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요지로 上書한 전문이 《황성신문》에 실렸다.³⁵⁾ 한편 이순범의 상소는 9일 하오 2시 정부회의에 제의되었는데, 상소의 어구가 문제되어 이순범을 체포할 것을 고종에게 上奏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순범의 탄핵으로 외부대신 이하영은 12일에 사직소를 제출하였다.³⁶⁾

일본은 개척권 요구를 반대하는 한국인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구속 설득하고, 이순범을 앞세워 시위군중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9일 저녁에 붙잡아간 이순범을 다음날 정오에 대동하고 종로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황지 개척은 한국의 장래에 다대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연설케 하였다. 그러나 방청하던 사람들은 더욱 격앙하여 한바탕 반박하였다.

일본 경찰은 반대 인사들을 붙잡아다가 문초 회유하려고도 하였다. 呂永祚 등은 일본경찰서로 강제연행되어, 金斗星・吳周爀・李昇宰와의 관계를 확인 받고, 양국간의 조약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받았다. 여영조는 여론이 들끓는 까닭은 협상조약 중의 3개조, 對韓經營諸件, 산림・천택・원야・한광지의 허가 요청, 철도부설의 역부동원의 폐단 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한경영건의 시행 중지, 鐵道章程 更定, 그리고 산림・원야의 건을 논하지 않으면,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7)

신사들은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려고 기도하였다. 서울 草洞에 설치된 紳士疏廳(播紳章甫疏廳)은 前判書 朴箕陽·前承旨 尹始永을 疏首로 하여 상소하였으나 정부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11일에 尹秉 등의 주도로 전국 341개 군에 통문을 보내 황무지개척권을 일본에게 절대 양허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38)

이에 긴장된 의정부는 윤병 등이 각도에 발송한 통문을 郵遞司에서 탐문

^{35) 《}皇城新聞》, 1904년 7월 8일, 잡보〈上政府書〉.

^{36) 《}皇城新聞》, 1904년 7월 11일, 잡보〈李氏被捉〉・12일,〈政府奏本〉・13일,〈外相辭疏〉.

^{37)《}皇城新聞》,1904년7월11일, 잡보〈與日本警察署長論辨〉・12일, 잡보〈政府 奏本〉。

^{38) 《}皇城新聞》, 1904년 7월 14일, 잡보〈疏廳通文〉.

하여 없애게 하라고 내부에 지시하고, 내부는 각도에 금단하라고 電筋하였 다. 의정부가 13일에 다시 내부에 電報하여 電訓을 거행하라고 강조하였으 나, 신사소청에서 疏首 尹始永 등이 재차 상소하였다.39) 내부가 각도에 전훈 하여 통문을 금단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신사소청은 15일과 16일에 걸쳐서 《황 성신문》에 특별히 광고하여, 윤병 등의 통문을 금지한 것은 정부가 잘못 인 식한 것이므로, 신사들은 구애되지 말고 복합상소에 참석하라고 역설하였다.40) 《황성신문》은 황무지개척안 문제를 놓고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漢城報》 와 3차에 걸쳐 논쟁을 전개하여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대여론을 고조시 켰다.《황성신문》이 日警의 한국인 체포, 연행을 논박한 것을,《한성보》가 그 언사가 불경하고 句語가 이치에 어긋났다고 비난하였다. 《황성신문》은 富 源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외국인에게 양여하면, 한국은 비록 殘 金零利를 획득하나 소득이 잃은 것보다 크며, 전국의 2/3나 되는 황무지를 일본에게 양허하면, 한국에 남을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일본이 개척안을 되돌려 받고 요구를 정지하면 통문·상소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한

성보》가 러시아는 침략자요. 일본은 보호자라고 주장하자. 《황성신문》은 러 시아는 삼림만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전국 강토의 2/3를 요구하니, 일본의 요 구가 러시아보다 심하다고 논박하였다. 《한성보》가 진황지 개척의 요구는 의 사의 良藥이라고 다시 반론하자. 《황성신문》은 사람에 비유하여 3차 반론을 폈다. 사람이 병이 깊었는데 의사가 치료한다고 칭하고 먼저 집과 전답을 점 탈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치료받지 않고 죽을지언정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2) 농광회사의 설립

이를 의로운 의사라고 믿겠느냐고 반박하였다.41)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고, 단호히 거절할

^{39) 《}皇城新聞》, 1904년 7월 13일, 잡보〈政府電話〉·〈紳士疏本〉및 14일, 잡보〈依 訓舉行〉.

^{40) 《}皇城新聞》, 1904년 7월 15・16일, 잡보〈紳士疏廳特告〉.

^{41) 《}皇城新聞》, 1904년 7월 14・15・18일, 논설〈答漢城子〉・〈辨漢城子之答答〉・ 〈三辨漢城子之論〉.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었다. 황무지개척권 양여를 반대하는 상소나 건의 중에는, 일인에게 개척사업을 허락하지 말고 한국인에게 개척권을 주어 자주적으로 개척하게 하면, 한국민에게 이롭고 일본인의 요구도 물리칠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6월 25일에 前議官 洪肯燮이 구체안까지 작성하여 중추원에 헌의한 바는 그 대표적인 대안이었다. 그는 모든 陳荒地를 인민들에게 특허하여 개척하게 하면, 인민에게는 이롭고 외국인들의 청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御拱院을 빨리 없애고 진황지를 모두 농상공부에 부속시켜 관할케 하고, 曠地의 起墾開拓, 堤堰築洑와 種植耕作하는 권리는 각각 해당 지방인민에게 會社를 특허하게 하며, 정부가 지원해서 인민들이 개척하게 하라고 주장하고, 황무지 개척과 회사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의하였다.42)

홍긍섭의 제안은 고조되는 국민의 반대여론과 계속되는 일본의 강요 사이에서 곤경에 처한 한국 정부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때에 중추원부의장 李道宰·장례원경 金宗漢 그리고 安心中·鄭紋源·洪中燮 등이 주동이 되어 황무지 개척사업을 목적으로 農鑛會社(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궁내부와 농상공부에 특허를 청원하였다. 회사설립 자본금은 액면 50원의 股(株券) 20만 株로 총 1천만 원이었고, 사장에는 이도재가 선임되었다. 회사규칙은 18조로 되어 있다.43)

회사규칙에는 황무지개척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고 또 실지 경영하던 金·銀·銅·鐵 등 각종 광업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들의 침탈로부터 국내 광업권을 보호하고 개발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궁내부 어공원경 朴鏞和의 명의로 7월 11일에 이 회사에게 우선 황무지개척을 특허하여 한국민의 개척사업을 시작케 하고, 광업에 관한 것은 보류하였다.

일본공사는 어공원경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갖추지 못해 개척사업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한 계략에서 농광회사를 설립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한일의정서

^{42) 《}皇城新聞》, 1904년 6월 27일, 잡보〈樞院獻議(續)〉.

⁴³⁾ 尹炳奭, 앞의 책, 110~111쪽.

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는 황무지개척권의 요구를 반드시 허락하라고 촉구하 였다.44)

일본은 농광회사의 설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농광회사가 개척사업을 직접 착수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였다. 일본공사는 농광회사가 비밀리에 제3국의 차관을 얻을 교섭을 하고 있다고 거듭한국 외부에 항의하였던 것이다.45)

(3) 보안회의 투쟁

한국민의 황무지개척권 반대투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전직 관료와 유생들의 상소와 헌의가 중심이 되던 반대운동은 점차 집단 또는 단체의 투쟁 형태로 전환되어 갔다. 상소와 언론을 통한 반대운동을 대규모 집회운동으로확대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주도한 단체는 輔(保)安會였다.

7월 7일에 산림·천택·원야·진황지 문제로 신사들이 연명상소를 올렸는데, 그 논술이 문제되어 疏首인 奉常司副提調 이순범이 9일에 체포되었다. 상소에 참여한 신사들은 평리원에 들어가 법적 조치를 함께 받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관이 소수는 조정의 처분으로 구속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을 가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소에 참여한 사람들은 종로 白木廛都家에 모여 여러 사람들에게 통문을 발송했다.

13일에 前議官 宋秀萬·沈相震 등 朝臣과 유생들이 백목전도가에 모여 외국인에게 황무지개척권을 빌려주는 것은 불가하니, 일본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연설하고, 이 사안에 관계한 외부대신 이하영 등을 성토하였다. 그리고 강토를 보전할 계획을 기약하고 輔國安民을 뜻하는 輔安會를 개회하였다. 장차 유망한 대신을 회장으로 擇薦한 후 궁궐 앞에서 상소를 올릴 계획을 세웠다. 경무청의 순검과 헌병대 대원이 방청하고 보안회의 연설인 이외의 인민들을 설득하여 해산시켰다. 이튿날에도 백여 명이 백목전도가에 모여 연설하였다. 이날 보안회는 일본의 요구를 철폐시킬 때까지 매일 집회하기로 정하고, 중추원부의장 이도재를 의장으로 추천하였다. 이도재는 고

⁴⁴⁾ 尹炳奭, 위의 책, 112쪽.

⁴⁵⁾ 위와 같음.

사하였다.46)

송수만·심상진 등은 전국에 통문을 발하고 정부의 각 부서와 대관 집까지 公函을 보내, 일본인이 산림·천택·원야·진황지를 청구하는 것은, 곧한 나라의 존망과 인민의 사생을 결판내는 것이라 하고, 대한의 신민된 자는한 목소리로 준열히 물리칠 수밖에 없으므로, 종로 백목전도가에 임시회의소를 설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여러 대신들은 임시회의소에 회동하여 이 문제를 널리 의논, 타결하는 자리가 되게 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그리고 보안회의 운영요강을 아래와 같이 내세웠다.

〈보안회의 운영요강〉

- 一. 전국의 山林·川澤·原野·陳荒의 토지를 청구한 일을 모여서 같이 妥商 할 것.
- 一. 회원의 言權은 다만 위 項의 문제를 타정하는 것으로만 할 것.
- 一. 회를 폐하는 기한은 위 항의 문제가 귀결되는 그 날로 정할 것.
- 一. 위 항의 문제는 국제교섭에 위배되니, (문제를) 일으킨 정부대신의 탄핵 은 회원들이 法司에 부쳐 죄를 받게 할 것.

(《皇城新聞》, 1904년 7월 16일, 잡보〈保安所函請〉).

서울에서 황무지개척권 요구 반대운동이 조직화되고, 보안회 등에서 보낸 통문이 전국에 전달되면서, 지방에서도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平北 寧邊郡民 들은 통문을 보고 격분하고, 지방 진위대 병사들이 일본군 兵站部에 총격을 발하였다.⁴⁷⁾

보안회는 16일 하오 3시에 백목전도가에서 모임을 갖고, 회장에 申箕善, 부회장에 前承旨 宋寅燮을 천거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代辯會長에 宋秀萬을 선출하였다. 10여 명이 회장 초청을 상의하고 있을 때, 일본 警部 와타나베 (渡邊)가 순사 1명을 대동하고 와서 군중들의 격렬한 저항을 무릅쓰고 송수 만과 송인섭을 붙잡아 갔다.

보안회는 사태를 의정부와 외부에 보고하였다. 외부대신은 交涉局長 金益

^{46) 《}皇城新聞》, 1904년 7월 15일, 잡보〈宋氏演説〉・16일, 잡보〈醉狂激言〉・8월 1일, 잡보〈宋氏供案〉.

^{47)《}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214~215쪽.

昇을 보안회에 보내 사실을 문의한 뒤에 일본공사관에 항의하였다.48) 17일에 외부대신과 협판이 일본공사에게 송수만·송인섭을 붙잡아 간 것을 항의하고, 범죄 여부는 한국 사법관이 응당 查辦할 일이니, 韓日修好條規 제10관에따라 한국 法衙에 교부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공사는 유생들이 照諒하는 것을 방임하고 금압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오히려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변하였다. 또 영변군민이 일본 병참부에 총격을 가한 것도 통문이지방인심을 불러 일으켜 사단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공사의 직책으로 機宜의 조치를 시행함은 부득이하였다고 변명하였다. 송수만 등을 還交하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앞으로 이런 행위를 엄금한다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49)

고종은 경무청에 칙명을 내려 보안회를 해산케 하였다. 보안회는 백목전도 가에서 폐쇄하고 17일부터 典洞의 漢語學校로 옮겨 신사 2, 3백 명이 날마다 모여 개회하였다. 前侍從 元世性이 대변회장을 맡고, 문 앞에 大韓國旗를 높이 게양하여 기세를 올렸다. 정부는 헌병과 순검을 보내 문의 안팎을 지키게 하였다. 회장 申箕善에게 보안회소로 출석하기를 청하고, 鄭寅燮 대신 朴箕陽을 부회장으로 추천하여,500 조직을 정비 강화하였다.

송수만은 18일에 일본공사관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는, 보안회는 강토를 보전할 계획을 기약한 것이지 소요를 일으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 하였다. 황무지개척권 반대를 某 대관과 상의할 때 고종으로부터 恩燭이 있 었다는 설이 있고, 또 모모 인사가 충동했다고 하며 고종과의 관련 여부를 질문받았다. 송수만은 國事로서 陳疏・獻書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누구의 지시나 상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51)

18일에 하기와라는 하야시공사가 착임하는대로 고종황제를 알현하기를 요청하고, 송수만·송인섭은 외부가 먼저 어떻게 처리한다는 답변을 하면, 조처하겠다고 답하였다.52) 이 즈음에 배일운동을 하는 '暴民'을 진압하기 위해,

^{48) 《}皇城新聞》, 1904년 7월 18일, 잡보, 〈日捉韓紳〉・8월 1일, 잡보〈宋氏供案〉.

^{49)《}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213~215\.

^{50) 《}皇城新聞》, 1904년 7월 19일, 잡보〈駐隊增置〉・〈日捉韓紳〉・〈 輔安移所〉・ 〈長副請帖〉.

^{51) 《}皇城新聞》, 1904년 8월 1~4일, 잡보〈宋氏供案〉.

서울 주차군을 3천 명 가량 증치하겠다고 일본공사가 한국 정부에 알려 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보안회는 18일에 총대원을 의정부와 외부로 파송하여,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한 照會를 일본공사관에 繳還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의정부에서는 격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외부는 10여일 전에 격환하였는데 받지 않아 유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고종이 權任巡檢 扈鎭淳을 통해 다시 칙령을 내려 보안회를 해산할 것을 효유하였다. 그러나 임시대변회장 원세성은 강토를 사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보안회원들이 여러 번 칙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요구를 외부에서 되돌려 보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니, 일본의 청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물러가겠다고 하였다. 하오 3시에 다시 헌병이 고종의 명으로 勅敎하고, 5시에 또 칙령을 내려 해산할 것을 효유하였다. 칙사를 세 차례나 보내 해산을 명령하였지만, 보안회는 죽음을 무릅쓰고 황무지 개척권 요구가 철회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해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고수하였다.53)

외부는 19일에 일본공사에게, 장차 정부가 황무지 및 산림 원야를 개척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고, 이미 어공원을 설치하고 장차 개척을 주관할 것이며,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결단코 외국인에게 황무지개척권을 불허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통보하였다.54)

7월 20일경에 이르러 보안회는 조직을 정비, 강화하였다. 보안회 내에 수천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외부에게 長書를 보내 황무지개척안을 반환했는지를 질문하였다. 외부는 방금 되돌려 보냈다고 회답하였다. 보안회는 '大韓輔安會章'을 刻造하여 각종 문서에 사용하고 會章을 관민에게 광고하였다.

보안회가 서울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반대하

^{52)《}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217~219\,

^{53)《}皇城新聞》, 1904년 7월 20일, 잡보〈三諭復奏〉.

^{54)《}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221~222等.

[《]皇城新聞》, 1904년 7월 22일, 잡보〈外照日館〉.

는 운동을 지속하자, 지방에서도 호응하여 의연금을 보내 격려하고 상인들이 철시하여 투쟁에 참여하였다. 21일에 鳳山郡守 洪世永과 前郡守 金亨濟가 의연금 5백 냥을 보안회에 보내왔던 것이다.55) 종로의 각 상인들은 보안회의 통문을 받고 撤市하였다. 농민들도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가 생활 터전을 모두 탈취해 가려는 계획으로 인식하고, 한국인 2천만이 다 죽지 않는한, 결코 토지를 빼앗길 수 없다고 다짐하였다.56)

21일에도 회원 3, 4천 명이 보안회에 모여 일장 연설한 후에 격분하여 통 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대변회장은 정부에 장서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각국 공관에도 장서를 보내, 일본공사가 나가모리의 황무지개척 안을 외부에 조회하여 요구하였는데, 진황지는 인민들이 생활하는 바탕으로 한번 외인에 양여하면, 전국 강토를 모두 빼앗겨 인민이 참혹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송수만이 衆議를 모아 강토를 지킬 방책을 정부에 개 진했는데, 일본 경찰관이 총을 쏘고 몽둥이를 휘둘러 송수만·송인섭을 잡아 다가, 일본 공사관에 구속하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리고 각 공관이 만국공법 을 위반하는 일본공사와 일본인의 침탈을 막아 우리가 전국 강토를 지키고 세계가 우의를 완비하길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보안회의 장서를 《대한매일신보》는 논설에서 언급하고, 《황성신문》은 이를 번역 게재함으로써, 57) 전국민의 여론을 더욱 고조시켰다. 《대한매일신보》는 황무지청구를 반대하기 위해 각처에서 모인 공동회의의 연설자를 일본 공사관이나 영사·경찰서에서 포고 심문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안회가 각부 대신에게 상서한 것은, 위급 존망의 시기에 國事에 힘쓰기를 권면하고, 보안회 회의에 참석하여 동포들의 의견을 두루 듣기를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보안회장 李裕寅은 21일에 일본공사관을 방문, 산림·천택의 진황지 개척 요구를 일본 정부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일본공사는 연일 한국인들이

^{55) 《}皇城新聞》, 1904년 7월 21일, 잡보〈日照繳還〉·〈長副許參〉및 22일, 잡보· 광고.

^{56)《}皇城新聞》, 1904년 7월 23일, 논설〈農談野說〉・26일, 잡보〈諭禁撤市〉.

^{57)《}皇城新聞》, 1904년 7월 22일, 잡보〈申報譯載〉·〈輔安會狀況〉및 23일, 잡보 〈函訴各館〉.

집회하여 인심이 소란하니 해산하면, 진황지 요구안도 철회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보안회 활동이 격화되자, 일본은 당황하여 한국 정부에 보안회를 해산시키고 반대운동을 일체 금압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보안회를 강제로 금압할 수 없고 설득하여 해산시키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외교나 경찰력으로 한국민의 반대투쟁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21일에 한국의 치안은 한국주차 일본군이 담당한다고일방적으로 통고해 왔다. 하야시는 가까운 시일에 증가된 일병이 서울에 들어올 것이니, 親衛 제3대대 兵舍를 借給하여 일병을 居接케 하라고 외부에요청하였다.58) 그리고 헌병으로 하여금 서울을 엄히 경비하고 步兵과 砲兵을성내로 진주시켜 官民을 위협하였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22일에 典洞 漢語學校에서 보안회 집회가 열렸다. 이유인이 전날 일본공사와 면담한 내용을 공표하고, 집회를 해산하였다가 황무지개척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집회하여도 늦지 않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모두 반대하여 큰 소리로 회장에게 복종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원세성이, 일본이 진황지요구안을 철회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잠깐 휴식하자고 제안하였다. 여러 사람이 연설하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 와중에 일본 헌병과 사복 순사들은 보안회 핵심 회원들인 원세성·심상진·鄭寅琥・申學均 등 4인을 모두 포박해 가고, 보안회 문서를 모두 搜探하여 압수하고 보안회 회소를 폐쇄하였다.

지도부가 일본 군경에 붙잡혀 갔으나, 보안회는 굴하지 않고 반대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일본 군대에 의해 한어학교가 폐쇄되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鍾街로 雲集하여 白山을 이루고 한바탕 연설로 일본을 성토하였다. 일본 헌병 수명이 말을 타고 六穴砲와 長刀를 좌우로 휘두르며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자, 보안회 발기에 참여하여 적극 활동한 鄭淳萬은 "정순만이 여기 있으니 한 치의 땅도 가져가지 못하리라"고 소리치고, 일본 헌병에게 나아가, "너희들이 육혈포와 장도를 빼어들었으니, 나를 총으로 죽이던지 칼로

^{58) 《}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226~227・231~232쪽. 《皇城新聞》, 1904년 7월 25일, 잡보〈請借營居〉.

찔러 죽이라"고 소리쳤다. 헌병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장도를 칼집에 넣고 군중 사이로 다니기만 하였다.

저녁 8시 경에 騎隊副領 李泰來와 警務官이 칙령을 받들고 와서, 일본 관현에 붙잡혀 간 사람들을 한꺼번에 석방케 할 것이라고 효유하고, 해산하였다가 명일 다시 모여도 늦지 않다고 하며 해산시키려 하였다.59) 그러나 군중들은 더욱 격동하여 연설하며 통곡하였다. 저녁 9시경 司果 李範錫이 일장 연설을 하다가 日兵에게 붙잡혔다. 前主事 白樂衡이 연행해 간 이유를 힐문하다가 난투전이 벌어졌다. 일병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백낙형을 廣通橋 위에까지 끌고가 총자루와 주먹을 휘둘러 구타하였다. 밤 11시경 日兵 1개 분대가 다시 와서 집회를 모두 해산시키려 하였다. 끝내 듣지 않자, 일병은 총으로 申永均을 때려 상해를 입혀 사경에 이르게 하였다. 일병은 군중을 모두몰아내고 몇 명을 헌병대로 붙잡아갔다. 22일 밤 11시경에 勅使의 권유로 보안회는 해산하였다. 보안회는 이때부터 표면상 집회투쟁은 보류하였다.60)

4)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철회

보안회 집회에서 군중과 일본 군경이 충돌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심 수습에 나섰다. 외부는 22일 저녁에 일본공사에게 한어학교에서 보안회 회원 4인을 일본 군경이 포박해 간 것을 항의하고 신병인도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도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22일 하오 7시에 종가 民會에서 일본 군경이 이범석 등 3인을 붙잡아 가고, 특히 상해로 피를 흘리는 신형균을 들것에 태워 갔으며, 23일 아침 9시에 朱興均을 붙잡아 간 것 등은 심히 경악할 일이라고 항의하였다. 송수만・원세성・신형균등을 즉시 우리 정부에 環付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은 군사를 주둔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 하였다. 외부가 진황지개척 요구를 거절할 뜻으로 공문을 보내자, 23일

^{59) 《}皇城新聞》, 1904년 7월 23일, 잡보〈會長説明〉・〈日兵捕縛會員〉・〈更會鍾街〉、 《大東共報》, 1909년 5월 5일,〈鄭淳萬氏의 歷史〉.

^{60)《}皇城新聞》, 1904년 7월 25일, 잡보〈白氏激忿〉・〈押人散會〉・〈政府告示〉.

에 일본공사는 외부에 되돌려 보내고, 보안회의 단속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황무지개척안을 외부대신과 만나 和衷하여 처리하자고 제안하였다.61)

한국 정부는 집단적인 배일투쟁을 설득으로 해산시키려 노력하였다. 의정부는 23일에 각 坊曲에 고시하여, 황무지개척을 일인에게 讓借하지 않을 것이니, 집회를 해산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지시하였다. 24일에는 내부가 수원·충남·평남·평북·경남·경북에 유시하여, 산림·천택·진황지 사안은정부가 모두 인허하지 않기로 고시하였으니, 관하 부·군의 인민이 만약 취회하면 모두 해산케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순검이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종로의 상인들에게 철시를 급하고 開市하라고 효유하였다.62)

외부는 여러 차례 송수만·송인섭·원세성 등을 내보내라고 요청하였다. 일본공사는 법률로 징계한다면 송수만·송인섭을 인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경무사 申泰休는 원세성도 함께 보내라고 요청하였으나, 일본공사는 원세성 이 사령부에 구류되어 자신의 직권이 아니라고 회피하였다.⁶³⁾

외부는 진황지의 개척 사안을 거절하는 공문을 일본공사관에 보냈다. 그러나 일본공사는 외부에 격환하여 인허를 강요하였다. 외부는 26일에 다시 공문을 보내, 사건을 강제로 요구하여 민심이 비등해지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개척안을 조목별로 반박하고 절대 다시 제안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통보하였다. 64) 그리고 27일에 진황지 개척의 約稿와 일본공사가 반환한 공문을모두 일본공사관에 다시 반환하였다. 그러나 일본공사는 즉시 통역관 堀川을李夏榮의 사제에 보내 격환한 照復과 約稿를 송치케 하고, 외부대신이 出仕하는 날에 만나서 서로 절충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통보하였다.65)

^{61)《}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232·237~241쪽.

[《]皇城新聞》, 1904년 7월 25일, 잡보〈繳還外照〉.

^{62)《}皇城新聞》, 1904년 7월 25일, 잡보〈政府告示〉・〈曉諭解散〉・26일, 잡보〈諭禁撤市〉。

^{63) 《}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245~246쪽. 《皇城新聞》, 1904년 7월 27일, 잡보〈兩宋移囚〉・30일, 잡보〈一放一囚〉및 8월 1・4일, 잡보〈宋氏供案〉.

^{64) 《}皇城新聞》, 1904년 7월 27일, 잡보〈外部又照〉·28일, 별보. 《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247~249等.

^{65)《}皇城新聞》, 1904년 7월 29일, 잡보〈日又繳照〉.

내부는 27일에 13도에 훈령하여, 일인에게 寸尺의 땅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전국의 진황지에 일인이 표목을 표시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군에서 먼저 금단하고 내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66)

7월 30일에 참정 심상훈과 외상 이하영이 칙명을 받들고 일본공사관에 가서 하야시공사와 진황지 개척사건에 대하여 담판하였다. 일본공사는 다시는 황무지 개척안을 제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일본 정부는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더 이상 강행하지 않고 철회하였다. 그 것은 첫째 이를 계속 강요한다면 한국민의 배일감정을 더욱 악화시켜, 앞으로의 한국경영에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비등하는 公論에 밀려, 결코 한 치의 땅도 외국인에게 讓借하지 않겠다고 성명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있었으므로, 만약 개척권을 계속 요구한다면 한국내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 대신은 거의가 공론의 규탄 대상이 되고, 특히 외부대신은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실정이었다.

일본공사 하야시는 8월 1일에 본국 외무대신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개척안 요구를 일시 철회하자고 건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8월 2일에 헌병사령관 李址鎔을 일본공사관에 보내 好誼에 감사하였다. 3일에 일본 외무대신은 주한 공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원칙에 있어서는 일본의 요구를 승낙하고 농광회사에 대한 정부의 특허를 취소한다는 조건하에, 일단 개척안 요구를 철회하라고 回訓하였다. 한국 정부와 주한공사 하야시가 10일까지 교섭한 결과, 한국은 일본의 조건을 수락하고, 일본공사는 어느 시기까지 이 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67)

그런데 8월 20일에 산림·천택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일본공사와 외부 대신 사이에 황무지 개척문제로 교섭 중이라는 설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일 시 해산하였던 보안회는 27일부터 다시 典洞의 立廛都家에 續設하고, 李敎魯

^{66)《}皇城新聞》, 1904년 7월 28일, 잡보〈內部訓令〉,

^{67) 《}皇城新聞》, 1904년 8월 1일, 잡보〈陳荒案歸正〉・〈御供院廢止〉및 4일, 잡보 〈荒蕪案歸決〉.

尹炳奭, 앞의 책, 119쪽.

가 會長이라고 공포하였다.68) 황용성·이건석 등은 27일에 보안회를 다시 개회한다고 고시하였으나, 미비하여 29일 하오 1시로 회기를 연기하였다. 다시보안회를 개회한 목적은 황실 안녕, 국체 존중, 독립 공고, 민지 발달, 정치상 방침 충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언로를 널리 열어 민정을상달한다는 것이었다.

29일 하오 1시에 70여 명의 회원이 입전도가에서 개회를 준비하였다. 일본 헌병 4,5명이 와서 회장 李建奭을 일본 사령부로 끌고갔다. 헌병들은 보안회의 문부와 규칙 그리고 방망이를 모두 수탐하여 가고 선전도가의 앞뒷문을 지켰다.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해산하였다.⁽⁹⁾

일본사령관의 조사에서 이건석은 보안회의 主旨를 실상대로 설명하였다. 사령관은 회의 주지가 일진회보다 좋다고 찬성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일본을 배척하던 보안회란 이름을 고치고 일본군사령부에 설립 인허를 받으라고 강요하였다. 이건석은 다른 會는 비록 인허를 받았으나, 보안회는 자유로이행동하겠다고 주장하고 돌아왔다. 보안회에서 의논하여 協同會라 개명하고, 곧 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70) 그리고 취지서를 정부에 보내 개회하려하였다. 그러나 일본 헌병사령부에서 회의 세칙서를 보고 군략상에 방해가된다고 금지했다.71)

서울에서 보안회가 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지방에서도 호응하였다. 春川에서는 金某가 9월 8일에 산림·천택과 人丁 모집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통문을 발기하여 춘천향교에 돌리고, 뜻 있는 사람은 砲軍을 모집 인솔하고 10월 10일에 驪州에 모여서 서울로 가자고 권고하였다.72) 지방에서도 산림·천택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론이 일어나고, 일본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8)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20일, 잡보〈사와션긔〉.

[《]皇城新聞》, 1904년 8월 27일, 잡보〈保安會續〉.

^{69)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30일, 잡보〈보회징성〉·31일, 잡보〈회장피착〉. 《皇城新聞》, 1904년 8월 30일, 잡보〈保會被招〉.

^{70) 《}皇城新聞》, 1904년 8월 31일, 잡보〈改名設會〉.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31일, 잡보〈갱퇴회명〉.

^{71) 《}大韓每日申報》, 1904년 9월 2일, 잡보〈기역피금〉.

^{72) 《}皇城新聞》, 1904년 9월 15일, 잡보〈匿名稱義〉.

134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언론도 일본이 황무지개척을 다시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9월 29일자 《황성신문》은 정부 대신들의 각오를 촉구하고,73) 삼천리 강토의 산림·원야를 차라리 우리가 개척하여 耕種케 할지언정, 결코 約券을 외인에 게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공사는 궁내부의 玄暎運과 극비리에 개척권 문제를 협상하였다. 한국 측은 대여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개척 주체자로는 韓日合資會社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개척에 종사할 인원은 한국인으로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계획했던 척식 목적을 이러한 조건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이 제안을 외무대신을 통해 거절하였다.

결국 보안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거족적인 반대투쟁으로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좌절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계기로 한국에 軍事警察制를 시행함으로써 武斷支配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한국 토지의 강점은 일시실패했으나, 마침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1907년 7월 4일에 법률 4호로서〈國有未墾地利用法〉이 공포・실시됨으로써, 이후 일제의 국유미간지 약탈이 본격화되었다. 국유미간지 약탈에 성공한 일제는 이미 그들이 장악한 미간지와 驛屯土를 기반으로 1908년에 국책회사인 東洋拓殖株式會社를 설립, 본격적인 식민지경영을 추진하였다.

〈崔昌熙〉

4. 국채보상운동

1)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1) 일본의 차관공세

일본의 도발로 1904년 2월 8일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하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 하였으나, 일본의 강압

^{73) 《}皇城新聞》, 1904년 9월 29일, 논설〈荒蕪地案復起〉.

적 위협으로 중립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가 강제 체결되어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근거 로 한국에 대한 침략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갔다. 러일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하도록 한국 정부에 강요하였고, 한국 정부는 5월 18일 조약과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이어 일본은 한국의 내정을 개혁한다는 구실로 8 월 22일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체결하여. 한 국 정부의 각 부에 고문제를 설치하여 이른바 '顧問政治'가 시작되었다. 이때 재정고문으로 취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가 한국내 재원을 파악하 기 위하여 재정정리사업에 착수하면서 일본의 차관공세는 본격화되었다. 메 가타는 우선 1905년 1월에 한국의 문란한 화폐를 정리하기 위한 貨幣整理債 명목으로, 일본 第一銀行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입하였다. 차입조건은 海關稅 수입을 담보로 연 6푼의 이자로, 6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다. 화폐 정리채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금융공황을 초래하여 한국 경제계는 파산지경 에 이르렀다. 서울의 상인들은 漢城商業會議所를 설립하여 정부에 330만원을 貸下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공황을 야기한 것을 항 의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반면에 화폐정리로 일본의 금융독점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1890년대 이래 설립된 朝鮮銀行・漢興銀行・帝國銀行・漢城銀行・大韓天一銀行・韓一銀行 등 민족계 은행들은 재정의 자립이 어려워지고 토착상인자본도 몰락하여 한국 의 민족자본의 성장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한편 메가타는 1905년 6월에 舊債償還 및 歲計不足補充費 명목으로 200만 원의 國庫證券債를 발행하고, 이를 일본 정부의 지불보증으로 자국 내에서 모집해 들여왔다. 이 국고증권채는 국고금 수입을 담보로 하고 연 7푼 이자 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었다. 국고증권채도 일본의 식민지작업의 일단 인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재정지출에 충당되었다.

이어 러일전쟁 이후 한국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독점적 지배권을 장악한 일본은 1905년 11월에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통감부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질서를 본격화하였다. 1905년 12월에는 천일은행 및 한성은행의 창립 보조 대부와 지방 금융조합 창립자금 등 화폐개혁에서 비롯된 금융공황 구제 및 민간금융 지원 명목으로 金融資金債 150만원을 담보없이 무이자로 일본 정부로부터 차입했다. 그러나 거치연한 없이 7개년 상환으로 된 금융자금채 역시 명목과는 달리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와 어음조합 등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토착 상인자본을 흡수하고 민족계 은행을 그 세력권 안에 예속시키는데 충당되었다. 결국 일본 차관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재정·화폐·금융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차관공세 목적은 한국재정을 일본재정에 완전히 예속시키고,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고 한국의 경제적 독립을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일제의 강요로 교육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확장정리, 도로·항만시설의 개수확충, 궁방전 정리, 일본인 관리 고용등 각종 명목의 시정개선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부의 알선으로 일본에서 높은 이율의 차관을 도입하여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국채는 해마다 격증하였다.

3월에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한국의 안전과 富源開發을 위하여 차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시정개선 및 기업자금 명목으로 일 본 興業銀行에서 1,000만원의 차관을 도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차관은 관 세수입을 담보로 연 6푼 5리 이자에,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었는데, 口文 錢으로 100만원을 떼어 먹고 實受金 900만원을 1,000만원조로 차입하였다.

일본의 차관 공세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1907년 초에 원금만 1,65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그것은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취임한 이후도입된 貨幣整理資金債 300만원, 國庫證券債 200만원, 金融資金債 150만원,施政改善 및 企業資金條로 도입된 1,000만원 등 모두 1,65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된 것은 1,150만원이었고, 150만원은 그 이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자 또한 상당하였다. 1907년 2월에 당시 新債로 舊債약 350만원을 정리하고도 남은 對日 부채는 1,300여 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1906년 한국의 세입총액이 1,318만 9,336환이고, 세출총액이 1,395만 523환이 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채 1,300여 만원은 상당한 거액이었다.1)

이와 같이 통감부 설치 이후 대일 부채가 격증한 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국에서 도입한 차관으로 충당했기 때문이었다. 1905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약 5년 동안 한국의 대일부채는 4,500여 만원에 이르게 되었다.²⁾

차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강요된 타율적인 것이었으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거의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사용한 차관의 상환 의무는 대한제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제국 정부가 거액의 외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였다.

(2)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일본의 주도면밀한 정치·경제적 침략에 의한 식민지화 추진을 한국민은 국권상실이라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였다. 한국민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인 계층은 일본 차관의 중대와 경제적 침략으로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일본 차관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해결책을 모색, 대응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었다.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권수호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서 들여온 국채를 국민의 모금으로 갚자는 거족적인 애국운동이었다.3)

¹⁾ 崔 埃、《韓國新聞史論攷》(一潮閣, 1976), 116쪽,

度支部,《韓國財政施設綱要》(1910), 159~160等.
 李松姫,〈韓末 國債報償運動에 關党 一研究〉(《梨大史苑》15, 1978), 6等.

³⁾ 崔 俊, 〈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캠페인〉(《白山學報》3, 1967).

^{——,《}韓國新聞史論攷》(一潮閣, 1976).

朴容玉、〈國債報償運動에의 女性參與〉(《史叢》12・13, 1968).

^{———, 〈}國債報償運動을 위한 女性團體의 組織과 活動〉(《韓國近代女性運動 史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申載洪, 〈國債報償運動〉(《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78).

李松姬, 위의 글.

趙恒來, 〈國債報償運動〉(《한민족독립운동사》1, 국사편찬위원회, 1987).

국채는 국권의 상실 여부와 직결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채를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국채보상 움직임은 대구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07년 1월 29일(음력 1906년 12월 16일) 대구의 廣文社에서 그명칭을 大東廣文會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는 특별회가 개최되었다. 도내 인사 200여 인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회원 徐相敦은 국채 1천 3백만원을 갚지 못한다면 장차 토지라도 주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고금으로 갚을 수 없는 국채를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고, 그 대금으로 국채를 보상할 것을 제의하고 자신부터 8백원을 내겠다고 하였다.

회의 참석 회원들은 서상돈의 제의에 찬동하였다. 광문사 사장 金光濟는 당장에 실시하겠다고 찬동하고 자신의 담뱃대와 담배쌈지를 없애고 3개월 담배값 60전과 따로 10원을 더 내놓았다. 회장의 결심에 많은 사람들도 찬성하여 즉석에서 담배를 끊고 의연금으로 2천여 원을 갹출하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키로 한 후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였다. 대구 광문사의 국채보상취지서가 전국 각처에 널리 공포되고 각 신문에 게재되자, 각지에서 즉시 호응하였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곧 이어 광역의 지역별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 안에 다시 직업별·지방별·가문별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2월 21일 大邱民議所에서 斷煙會를 조직하고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황성신문》·《만세보》등을 통해 전해지자, 경향 각지의 각계각층 민중들이 즉각적인 반향을일으켜 적극적인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서울의 金成喜・劉文相・吳英根 등은 2월 22일에 國債報償期成會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국채보상운동을 서울에서 총괄하는 기구로 자부하고 그 취지서를 발표하여, 처음으로 회칙을 제정하여 합법적 운동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는 국채를 갚지 못하면 속국이되고 말 것이니, 2천만 민중이 담배를 끊고 의연금을 모집하여 국채를 깨끗이 완결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국채보상기성회는 의연금 收錢所로 7개소

李尙根、〈國債報償運動에 關한 研究〉(《國史館論叢》18, 1990).

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수합케 하였다.4)

이어 서울의 북촌에 사는 徐丙炎·尹興燮 등 59인은 전국 2천만 동포가 각각 의무금을 내어 1천 3백만환의 국채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서울에 國 債報價中央義務社를 조직하고, 전국 동포는 능력에 따라 다소를 불구하고 의 금을 연출하여 수금소인 황성신문사로 보내면, 그 씨명과 금액을 신문에 게 재하기로 하며, 收合金은 매월 말에 합계하여 신문에 포고하고 의금 저금소 는 신용있는 은행으로 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다.5)

각 지방에서도 도, 군, 면 단위로 국채보상운동을 지지하는 취지서를 발표하고 국채보상회를 발족하였다. 1907년 3월 말까지 전국에는 27개의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설립되었다.6)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고종황제는 2월 27일 우리 국민들이 국채를 보상하는 일로 담배를 끊고 그 대금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단연을 실천하고, 또 英親王의 吉禮를 7월(음력)로 연기하도록 명하였다.7)

고종황제가 단연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현직 관료와 지도급인사들도 단연을 결심하고 의연에 참여하였다. 전 참정대신 金聲根은 국채보상운동에 부응하여 舊貨 100원을 대한매일신보사에 전하고 일반 인민의 忠義에 감격하는 뜻을 표했으며, 閔泳韶·李鍾健・韓圭髙·沈相薰・趙東潤・李愚冕・趙同熙 등의 대관들은 국채를 보상하기 전에는 다시는 흡연하지 않겠다고 동맹하였다.

3월 2일에는 輔國 閔泳徽가 국채보상에 10만환을 捐助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규설도 많은 의연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다.⁸⁾ 掌禮院 主 事 李俊秀는 한 달 봉급이 15환에 불과한데, 그 중에 官報債와 儲蓄金 한 달

^{4)《}皇城新聞》, 1907년 2월 25일, 잡보〈國債報償期成會趣旨書〉.

^{5) 《}皇城新聞》, 1907년 2월 27일, 잡보〈義務社又起〉·3월 2일, 잡보〈國債報償告文〉.

⁶⁾ 조항래, 앞의 글, 74쪽.

^{7)《}大韓每日申報》,1907년 2월 27일, 잡보〈大哉皇言〉・3월 7일, 잡보〈聖意如天〉、 《帝國新聞》,1907년 2월 27일, 잠보〈聖上斷烟〉。

^{8)《}大韓毎日申報》,1907년 2월 27일, 잡보〈老宰義捐〉・〈大官斷烟〉.《皇城新聞》,1907년 3월 2일, 잡보〈閔氏斷烟〉・〈閔輔國愛國大義〉및 1907년 3월 5일, 잡보〈韓參政愛國出義〉.

치를 제하고, 나머지 14환 20전을 모두 황성신문사로 보냈다.9)

3월 5일에는 太僕司 主事 徐廷弼·李揆同이 각 부에 통첩하여, 일반 백성이나 어린이·노인까지 국채보상을 위해 몇 십 전이나 몇 원을 각각 의무로 捐補하는데, 관인으로서 연조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니 일반 관리가 월봉중에서 몇 환씩 저축금으로 떼어둔 금액을 추심 연보하는 것이 사리에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100

또한 官立英語學校에서도 교장 이하 학생과 사환까지 일제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을 국채보상에 쓰기로 동맹하고, 학업에 방해가 되는 흡연을 영원히 없애기로 하였다.¹¹⁾ 3월 4일에는 桂洞 普興學校 학도 가운데 11, 12세 된 생도들이 몇 십 전씩 갹출한 금액이 30원이나 되었는데 그 부형들이 아름다운 상황을 보고 담뱃대를 모두 없앴다.¹²⁾ 侍從武官府의 사환병 30명도 단연을 동맹하고 담배값 6원 20전을 모아서 국채보상기성회로 보냈으며, 陸軍硏成學校의 敎成隊 81명이 45원 52전 5리의 성금을 기성회로 보냈다.¹³⁾

서민층과 하층민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서울 양반집의 床奴와 針工들이 품값을 몽땅 의연금으로 바쳤다. 의지할 집도 없어 官人 집 內房에서 기숙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는 大安洞의 姜召史는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품삯에서 한화 4원을 의연하였다.¹⁴⁾ 奴僕도 술을 끊고 의연금 5원을 普成館 수전소로 보냈다.¹⁵⁾ 3월 20일에는 楊根 分院의 樵童들이 땔나무와 짚신을 팔아 3원을 수합하여 의연금을 기성회로 보냈고, 그 마을의 백정 金三用도 40전을 보냈다.¹⁶⁾

2월 24일에는 서울의 屛門 노동자들이 국채보상금으로 담배값을 다투어 거두고, 27일에는 북촌 인력거꾼이 4원을 의연하였으며, 23일에는 中署 생선 전 인력거 인부 23명이 5원 75전을 모으고, 4월 6일에는 西十字閣 屛門의 인

^{9) 《}皇城新聞》, 1907년 3월 2일, 잡보〈義哉李氏〉.

^{10) 《}皇城新聞》, 1907년 3월 5일, 잡보〈貯金義助〉.

^{11)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7일, 잡보〈同盟斷烟〉.

^{12) 《}皇城新聞》, 1907년 3월 4일, 잡보〈父感子義〉.

^{13)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8일, 잡보〈斷烟同盟〉・16일, 잡보〈軍人出義〉,

^{14)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6일, 잡보〈窮婦忠義〉.

¹⁵⁾ 조항래, 앞의 글, 77쪽.

^{16)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0일, 잡보〈樵童出義〉.

력거 인부 17명이 3원 40전을 모아 기성회에 전달하였다.17) 아이들은 세뱃돈을 내놓고, 고아원 학도들도 심부름값 등을 의연금으로 바쳤다. 新門 밖 柳海宗 노인은 82세의 나이로 노병을 무릅쓰고 짚신을 삼아서 처와 함께 비지를 사서 연명하면서도 신화 2원을 기성회에 바쳤다.18)

이와 같이 운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의연 참가자는 일반 서민대중 중심으로 옮겨졌다. 정부의 고관이나 부유층들보다 일반 민중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었다.

3월 3일에는 동문 밖의 永楓亭 佛教研究會에서 통상회를 개최하고 각 사찰에 통지를 보내, 일반 승려는 제 힘에 맞게 의연할 것을 결의하였다. 14일에는 終南山 彌陀寺 여승 40명이 의연금을 갹출하여 기성회에 보냈다. 승려 致海는 은사의 망령을 위하여 의연하였다.19)

3월 13일에는 원산 臥牛洞 기독교회당에서 국채보상을 위하여 斷煙을 일 치결심하고 권연 대금을 연조하기로 작정하고 수금위원을 선정하였다. 28일 에는 의주의 기독교인들이 취지를 열렬히 연설하자, 방청자들이 20, 30전에 서부터 2, 3원씩을 자원하여 출연하였다. 4월 5일에는 덕천군 기독교인 김문 근이 일장 연설을 하고 신화 10원을 출연하자, 한 군의 남녀노소가 다투어 의연하였다.20)

3월 17일 수원에서는 영국인 신부 夫在烈과 전교사 金萬俊이 성당에서 기도회를 갖고 남녀 교인이 일제히 출의하여 구화 120원 40전을 대한매일신보사에 보냈으며, 3월 18일에는 천도교에서도 거액을 의연하기로 하였다. 또한 3월 17일 康世允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2개월 봉급 10원을, 26일에는 昌陵의 書員 및 陵軍 41명이 11원 20전과 취지서를 각각 기성회로 보냈다.21)

^{17)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4일, 잡보〈青坪一曲〉・2월 27일, 잡보〈是母是子〉・3월 23일, 잡보〈車夫擧義〉・4월 6일, 잡보〈車夫出義〉.

^{18) 《}大韓毎日申報》, 1907년 2월 24일, 잡보〈忠義所激〉・3월 1일, 잡보〈奇哉此童〉・5일, 잡보〈梱履出義〉・6일, 잡보〈孤兒出義〉・7일, 잡보〈元童嘉愛〉・15일, 잡보〈兩兒可尚〉・16일, 잡보〈竜捐可讚〉.

^{19) 《}大韓毎日申報》、1907년 3월 7일、 잡보〈釋家愛國〉・14일、 잡보〈僧尼出義〉、

^{20) 《}皇城新聞》, 1907년 3월 13일, 잡보〈斷烟決心〉·28일, 잡보〈義府多義〉.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5일, 잡보〈徳民義捐〉.

^{21)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7일, 잡보〈奉侍義捐〉・21일, 잡보〈姑爲領收〉

3월 20일에는 각 약방에서도 국채보상운동에 대하여 의견을 일치하여 단연동맹을 하고 178명이 의연금 603원 75전을 수합하여 기성회로 보냈다. 28일에는 醫學校에서 千秋節을 맞이하여 교장이 교관과 학도들에게 '흡연이 위생과 경제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단연동맹가를 불렀다.²²⁾

한편 3월 16일에 성환 鶴巢洞의 崔斗卿은 어려운 생계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 50원을 연조하였고, 그의 어린 아들은 2원, 부인 서씨는 은가락지 2냥 5전중 한 쌍, 장모는 은비녀 1냥 3전중 한 벌을 의연하였으며, 고용하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1원 10전을 출연하였다. 한 집안의 온 식구가 의연을 하자, 군내의 인사들이 모두 최두경을 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²³⁾

27일에는 故 판서 金永穆의 부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작은 집을 마련하고 1천 냥을 의연하였으며,²⁴⁾ 4월 10일에는 淮陽郡 金應壽가 농우를 팔아 10원을 출의하였다.²⁵⁾

3월 7일 선천군민들은 국채보상을 위해 단연은 물론 담배를 팔지 않음이 옳다고 齊聲同盟하고 가게에서 권련 소매를 금지하였다. 28일에는 용천군 士民들이 단연동맹을 한 후에, 돈을 거두어 상점에 있는 담배를 사서 불살라 버리고, 이후 영구토록 담배를 팔지 말라고 상민을 효유하였다. 31일에는 재령읍의 유지 신사들이 국채보상을 각 동리에 권고하고, 장날에는 대중들에게 나라의 형편을 설명하여 출연한 금액이 거액에 달하였다. 특히 梁成玉은 자기 農藥草도 피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팔지도 않고 담배 40把를 불태우고 2원을 출연하였다.26)

국채보상운동이 단연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배판매 금지, 焚草, 義 捐 등으로 전개되면서, 4월 초 평안남도 23개 군의 各學徒春期大運動會에 참

^{· 26}일, 잡보〈陵軍義捐〉.

[《]皇城新聞》, 1907년 3월 18일, 잡보〈天敎愛國〉.

^{22)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0일, 잡보〈藥鋪義捐〉·28일, 잡보〈醫徒請願〉·18일, 잡보〈斷烟有歌〉.

^{23) 《}皇城新聞》, 1907년 3월 16일, 잡보〈渾家義捐〉.

^{24)《}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7일, 잡보〈賣舍捐金〉,

^{25) 《}皇城新聞》, 1907년 4월 10일, 잡보〈賣牛義捐〉.

^{26)《}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7일, 잡보〈宣市撤烟〉・28일, 잡보〈龍市焚草〉・31일, 잡보〈焚草捐金〉。

석한 학생과 관람자가 2천여 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의 흡연자도 없었다고 한다.²⁷⁾

성주군 국채보상의무회 회장 李承熙는 국가 안위가 국채보상에 달려있다 며 이 운동에 열중하였는데, 그가 아들과 조카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회갑연 비용 20환을 출연하자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 일문의 부인 중 에서 은가락지를 의연한 이가 있는가 하면, 그의 종질 基澈은 가사를 포기하 고 오직 국채보상운동에만 전념하였다.²⁸⁾

4월 14일에는 桂山學校의 11, 12세의 학동들이 국채보상회를 발기 조직하고 동조자들에게 수합한 15환 25전을 황성신문사에 보내고 계속 모금에 노력하였다. 아동들의 이러한 일에 비하여 부호들이 재물을 쌓아 놓고 인색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물의가 일어났다. 29) 같은 날 충주군 경무서 죄수 등이 짚신을 삼고 혹은 節食을 하여 6원 60전을 대한매일신보사에 보냈고, 해주 경무감옥서 죄수 윤학서・안영원 등이 가죽신을 만들어 판 돈 3원 45전을 의연하였다. 30)

이와 같이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계각층의 국민이 의연에 참여하였다. 애국계몽단체, 학회, 언론기관들은 국채보상운동의 취지서를 보도하고 보상소를 설립하여 이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大韓自强會·基督敎靑年會·西友學會·漢北與學會 등은 대개 기독교 청년회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무와 단연에 관한 토론회·연설회 등을 자주열어, 국민의 애국심을 환기하고 절용 보국의 생활을 강조하였다. 朴治勳은 '단연의 이해', 池錫永은 '흡연의 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으며, 尹孝定·劉猛・金宅鎭・兪承兼・石鎭衡 등이 청년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31)

한국민의 열렬한 국채보상운동 전개와 참여를 보고 외국인들도 감탄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에 있던 어느 서양인은 4월 14일 국채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민이 의연금을 내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27)《}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9일, 잡보〈密啞欽歎〉.

^{28) 《}皇城新聞》, 1907년 4월 11일, 잡보〈李氏愛國誠〉,

^{29) 《}皇城新聞》, 1907년 4월 15일, 잡보〈兒童奮義〉.

^{30) 《}大韓每日申報》、1907년 4월 14일、 잡보〈罪囚義捐〉・19일、 잡보〈海囚義捐〉.

³¹⁾ 趙恒來, 앞의 글, 81~82.

라고 감탄하고 4원을 의연하였다.32) 5월 26일에는 프랑스 선교사 明若日도 의연금으로 10원을 내었으며, 평안북도 永柔郡 梨花學校의 일본인 교사 正柳 好彬도 감격하여 2원을 의연하였다.33)

국내에서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국외의 한인사회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일본 동경의 유학생들은 대구에서 보낸 국채보상 취지문을 받고, 3월 18일에 1백여 명이 회동하여 斷煙同盟을 발기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자 일본인들이 구름같이 모여와서 축하를 하고, 일본에 체류하는 서양 각국 사람들도 각기 出義를 말하였다.34)

일본 유학생들이 설립한 太極學會 회원 등 800여 명은 국채보상운동이 적극적인 구국운동이라고 환영하고 단연과 금주를 실천하여 국채를 보상하자고 주장하고, 3월 9일 개최된 유학생총회에서 단연하여 절약된 담배값으로국채를 보상할 것을 결의하고 수금위원 3인을 선정하였다.³⁵⁾ 일본유학생들은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월 7일에는 수금한 18원 56전을, 5월에는 29원 49전을 황성신문사로 보냈다.³⁶⁾

미주 한인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共立協會는 김성무·임치정·이교담의 명의로 3월 25일에〈국채보상의연발기서〉를 발표하고 미주 교포들의 의연을 당부했다. 이 발기서에서는 일본 국채 1천 3 백만원을 만일 부패한 정부에만 맡겨두고 우리 국민이 보상할 방책을 강구치 아니하면, 마침내 종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국에서 유지인사들이 국채보상할 것을 발기함에 전국 인민이 일층 격앙하여 다투어 의연금을 모집하니, 해외에 있는 동포도 만 분의 일이라도 돕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발기하니, 미주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힘을 다하여 보조할 것을 바라며, 수전하는 곳은 공립신보사로 정하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3월 28일에 박형모

^{32)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6일, 잡보〈藏名義捐〉.

^{33)《}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26일, 잡보〈外國敎師義捐〉.

^{34) 《}皇城新聞》, 광무 11년 3월 21일, 잡보〈兩客同函〉,

³⁵⁾ 金祥起,〈韓末 太極學會의 思想과 活動〉(《嶠南史學》1, 嶺南大, 1985), 457쪽.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3일, 참보〈學生斷烟〉.

^{36) 《}皇城新聞》, 1907년 4월 13일, 잡보〈留學生斷烟〉. 《西友》 제6호(1907년 5월), 31~33쪽.

·남궁염·신봉희·염달욱 등이 '國債報償趣旨書'를 발표하고 동포들의 의연을 촉구하였다.

5월 7일에는 하와이 등지에 있는 교포 김성환 등이 34원을 모금하여 의연의 뜻을 표하였으며,37) 23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20명이미화 42달러(한화 83원 63전)를 모아 황성신문사로 보내왔다.38) 또한 4월 20일에는 노령 블라디보스톡에 거류하는 교포 36명이 국채보상금으로 55원을 거두어 국채보상기성회로 보냈다.39)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1) 국채보상운동의 확산

국내외에서 전국민이 호응하여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기탁하는 의연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4월 8일 李鍾一·金光濟·朴容奎·徐丙珪·李冕宇·吳榮根 등이 각 지방의 수금을 총관하는 통합기구로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를 설립하고 전문 29조의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규정과 공함을 발표하고소장으로 韓丰高을 추대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인 4월 초에 국채를 보상하기 위한 의연을 담당하는 총소가 없으면 실로 규합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사회와 13도 대표자들이 普成館에서 회동하여 國債報償聯合會議所를 조직하고 앞으로 聯合規則을 공간하기로 하고, 각 발기소에서 전후에 거둔 금액과 각 인명을 연합회의소에 보고하면 편집하여 월보로 간행하기로 하였다.40) 그리고 국채보상에 대한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國債報償調查會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주관하기 위해國債報償檢查所를 설립하였다.41)

^{37)《}帝國新聞》, 1907년 5월 7일, 잡보〈海外義助〉・27일, 잡보〈在外婦人義捐書〉.

^{38)《}皇城新聞》, 1907년 5월 23일,〈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9)《}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0일, 잡보〈居留民出義〉,

^{40) 《}皇城新聞》, 1907년 4월 11일, 광고.

⁴¹⁾ 李鉉淙、〈舊韓末 政治社會學會會社言論團體調查資料〉(《亞細亞學報》2, 亞細亞 學術研究會, 1966), 92~93等.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할 기구가 실질적으로 통일되지 못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연금 수합에 경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5월 말에 이르러 지원금총합소 검사원 李康鎬와 연합회의소 총무 김광제가 두단체를 대표하여 특별회를 열고, 각 지방에서 수합한 금액은 지원금총합소에서 총관하고, 일반 국민의 국채보상에 대한 지도방침에 관한 일은 연합회의소에서 장악하기로 결의하였다.42) 그러나 두 보상소가 의연기구를 대표하여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을 뿐,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하는 온 국민을 영도해 나간 통일기구의 설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43) 그렇지만 이제까지 분산적으로전개된 운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러, 두 보상소의주도 아래 많은 민중을 흡수하여 지도층과 민중이 결합되고, 각 지역별 지도자들이 통합되어 운동을 고조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나갔다.

당시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지도한 것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와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임원들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소수의 고급 관료층과 지식인·민족자산가 및 상인층이었다. 지원금총합소와 연합회의소가 한규설·윤웅렬·김종한 등 전직 관료나 민족자산가를 소장으로 추대한 것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흡수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일제의 탄압을 피하려는 방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44) 그리고 재무처리를 韓一銀行長 趙秉澤・天一銀行長 金基永, 農工銀行長 白完赫, 漢城銀行 총무 韓相龍, 창고회사장 趙進泰 등 은행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의연금 관리의 공신력을 높이고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방략상관료층과 민족자산가들을 표면에 내세웠으나, 실제로 국채보상운동을 거국적으로 주도한 것은 애국계몽단체·학회·언론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던 지식인들이었다.45)

국채보상운동에 의하여 모금된 의연금 액수를 살펴보면 운동이 시작된 지

^{42)《}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28일, 잡보〈兩所歸一〉.

^{43)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6일, 잡보〈中央聯合〉·〈月報將刊〉. 柳子厚, 앞의 책, 212쪽.

[《]帝國新聞》, 1907년 5월 28일, 잡보〈中央義務社〉.

⁴⁴⁾ 李松姬, 앞의 글, 25쪽.

⁴⁵⁾ 조항래, 앞의 글, 86~90쪽.

1년 3개월이 지난 1908년 4월 30일 현재 대한매일신보사와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에서 수합한 의연금 총액은 14만 3천5백42원 33전이었으며,⁴⁶⁾ 주한 일 본헌병대가 그 후 3개월이 지난 7월 27일 현재 집계한 의연금 총액은 18만 7천8백42원 78전 5리에 달하였다.⁴⁷⁾

그러나 국채보상을 위한 의연금 갹출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일제 통 감부는 이를 일종의 배일운동으로 단정하고, 온갖 모략으로 방해하고 간교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좌절 되고 말았다.

(2) 여성의 국채보상운동 참여

국채보상운동은 신분, 성별, 직업, 지역을 초월한 거족적 민족운동이었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첫 반향은 여성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나타났다.⁴⁸⁾ 신문에 국채보상취지서가 게재되자, 여성들은 즉각 개인적으로 참여하였다.

相思洞의 李召史는 은패물 머리장식을 팔아 구화 4원을 대한매일신보사에 보냈으며,49) 主醫院卿 梁性煥의 딸로 牙山 白岩의 李氏家에 출가하여 일찍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운 과부 梁氏는 서울 친정에 왔다가 《제국신문》을 보고, 여자도 또한 대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한화 20원을 제국신문사로 보냈다.50) 2월 24일에는 대구시장의 짚신장사・채소장사・술장사・떡장사 등의 행상을 하는 시골 할머니들이 50, 60전 내지 1, 2원을 다투어 의연하였다.51)

대구 국민대회 이틀 후인 2월 23일 대구 남일동의 부인들이 南一洞佩物廢 止委員會를 결성하고 전국 부녀동포에게 '경고아부인동포라'고 하는 제목의

⁴⁶⁾ 金正明 編,《日韓外交資料集成》6-保護及び併合(東京:嚴南堂書店, 1964), 50等. The Seoul Press, Sept. 30th, 1908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Fund: The Accused Acquitted."

⁴⁷⁾ 崔 坡, 앞의 글, 541쪽.

⁴⁸⁾ 사容玉, 〈國債報償運動의 發端背景과 女性參與〉(《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아세아문화사, 1994), 142~192쪽.

^{49)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4일, 잡보〈忠義所激〉.

^{50)《}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6일, 잡보〈夫人愛國〉.

⁵¹⁾ 朴容玉, 앞의 글, 143쪽.

격문을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였다. 격문에서는 국채를 갚으려고 2천만 동 포들이 석 달간 연초를 끊고 그 대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고 진정 아름다우나, 보상취지서가 남성의 참여 방법만을 제시한 것을 비판하고, 여자도 나라의 백성이니 다소를 불구하고 패물 등속을 바쳐 혈심 의연하여 국채를 갚자고 제의하였다.52)

이것은 여성들이 처음으로 조직을 통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이었다. 정운갑처 서씨·서병규처 정씨·정운화처 김씨·서학균처 정씨·서석균처 최씨·서덕균처 이씨·김수원처 배씨 등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의 발기인들은 자발적으로 솔선하여 자신들의 은반지·은장도·팔찌·목걸이 등 총 13냥 8돈중의 패물을 보상운동에 의연하였다.

대구의 부인들이, 여성도 국채보상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분연히 외치자, 각지에서 적극 동참하여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 되어 갔으며, 언론기관에서도 여성의 의연을 특별히 게재하여 격려하였다.

① 서울 지역

서울에서는 金一堂・金石子・朴悔堂 등에 의하여 2월 28일에 식생활을 절약하여 국채보상금에 보태자는 뜻으로 婦人滅餐會가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부인감찬회는 朝夕飯米를 반감하여 그 감한 것을 3개월간 국채보상금으로 의연할 것을 결의하고, 부인들을 권면하는데 나섰다. 이들은 한 사람의 3개월간 쌀 소비량은 세 말이므로, 그 반값인 한 말 반의 쌀값 2원 70전을 의연하고, 실행기간은 3개월, 2개월, 1개월 등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발기인들은 먼저 3개월간의 감찬비를 출연하여 황성신문사로 보냈다. 또 많은 부인들의 참여를 권고하는 부인감찬회 경고문 500장과 영수증 3책을 정밀히 인쇄하여 3월 14일 경에 황성신문사에전하여, 경고문은 신문을 배포할 때 1장씩 끼워 전달케 하고, 영수증은 의연하는 부인에게만 繕給하도록 부탁하였다. 부인들의 滅餐은 남자들의 단연보다실천이 더 어렵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대한매일신보》나《만세보》는 부인들의 감찬이 애국심과 과단성에 있어 뜻 있는 남자들보다 훨씬

^{52)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8일, 잡보〈경고아부인동포라〉.

존경할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53) 부인감찬회를 발기한 3인은 모두 一進會 간부들의 副室이었는데, 이들도 국채가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것임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인감찬회가 조직된 이후 여성들의 국채보 상운동에의 참여는 매우 활발해졌다. 또한 서울에서는 직업 등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국채보상에 참여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藥房 妓生 39인이 신화 20여 원을 모집하여 제국신문사에 납부하였으며,54) 太醫院 醫女 41인이 24원, 궁내부 기녀 40인이 24원을 의연하였다.55)

여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은 養閨義塾 여학생 33 인이 4원 20전, 이화학당의 교사와 생도 35인이 5원 70전을 의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56) 상류층 양반집의 부인들도 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초에 大安洞國債報償婦人會가 결성되어〈國債報償婦人會趣旨書〉를 전국 부인들에게 보냈다.57) 취지서에는 여성도 국가의 혜택을 입고 있으므로 백성된 도리로서 참여하여 협력하자는 뜻에서 국채보상부인회를 조직한 것임을 밝히고, 각자가 의무를 느껴 자발적으로 의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회원자격을 양반부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의금을 내기만 하면 성책에 올려 같은 회원이 된다고 함으로써 신분적 개방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앉아서 의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직접 집집을 찾아다니며 독려하고, 바로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약속 예정액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물의를 일으키자, 부인회에서는 3월 20일 경 기금을 억지로 수렴하지 않고 누구든지 의금을 가져오는대로 받는다는 취지서를 여성들에게 보내고 보상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만 하였다.58)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전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전 통사회의 지도적 위치를 점하던 북촌의 양반가 부녀들에 의하여 조직되었으

^{53)《}萬歲報》, 1907년 3월 2일,〈婦人減餐會警告文〉・〈婦人減餐會發起〉.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3일, 잡보〈茶半叢話〉.

[《]皇城新聞》, 1907년 3월 1일, 잡보〈夫人愛國〉・15일, 잡보〈兩夫人愛國熱誠〉.

^{54) 《}皇城新聞》, 1907년 2월 26일, 잡보〈藥妓烟價〉.

^{55) 《}帝國新聞》. 1907년 2월 25일. 잡보〈國債報償〉・3월 8일. 잡보〈국채보상〉.

⁵⁶⁾ 朴容玉, 앞의 글, 151쪽.

^{57)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5일, 잡보〈국채보상부인회취지서〉.

^{58)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1일, 잡보〈夫人知義〉・23일, 잡보〈협잡가통〉.

므로 사회적 지도력과 공신력이 높았으며, 여성계의 국채보상운동을 대표하는 총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그들은 양반 부인들의 전통적인 고압 자세를 버리고 적극 발벗고 나서 실천적으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방의호응을 많이 받았다.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가 조직된 후 11월까지의 모금실적은 1회에 걸쳐 199명으로부터 현금 141원 10전, 은 4냥중을 수합하여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냈는데, 그 가운데 다섯 번은 지방에서 수합한 것이었다.59)

이 밖에 서울에서는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여성단체들의 국채보상운동도 활발하였다. 서울여자교육회·진명부인회·대한부인회 등이 보상금 모집소를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② 경상도 지역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여성단체가 제일 먼저 조직된 곳이었으므로, 대구 여성들의 국채보상 참여는 매우 활발하였으며 참여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구 斷煙會가 北後停에서 국채보상금을 모금하기 위해 국민대회를 개최한 지 2일 후인 2월 23일 대구 여성들은 南一洞佩物廢止婦人會를 결성하고, 남성 위주의 국채보상운동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여성들의 의식을 계발시키는 계몽적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구의 여성들은 현금과 쌍가락지, 은장도 등을 대구군 국채보상회사무소에 집송하였다. 大邱斷煙價價會事務所가 대한매일신보사에 보낸 의연자의 명단 중 부인은 227인에 달하였고, 이들은 舊貨 407냥 3전, 新貨 189원 90전, 그리고 패물 5점을 출연하였다.60) 이렇듯 대구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결성 이후 계속해서 귀천을 불문하고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가 늘어났는데, 특히 남의 집 고용살이나 針工으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여인들의 의연과 외로운 과부의 의연은 많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감동케 하여참여의식을 한층 더 고취시켰다.61)

⁵⁹⁾ 朴容玉, 앞의 글, 148쪽.

^{60)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2일 및 5월 14 · 16 · 17일, 광고.

⁶¹⁾ 李尙根, 앞의 글, 19쪽.

부산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보다 먼저 이 운동에 참여하여 釜山港佐川里婦人會減膳義捐會·부산영도국채보상부인회, 그리고 부산항 내의 기생단 연동맹·수정동부인의연회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박정희의 처 淑夫人張氏가 중심이 되어 좌천리에서 조직된 부산항좌천리부인회감선의연회는 충군애국의 마음은 남녀가 다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가정의 治産을 맡은 부인들이 우선 살림에서 절용하여 조석 반찬값에서 매일 3, 4푼씩을 줄여, 한달에 新貨 20전 가량을 모아 국채보상금으로 출연하여, 이것으로 국채의 적은 부분이라도 갚아 국토를 지키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취지를 밝혔다.62)

부산영도국채보상부인회는 언제 조직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6월 22일에 100명이 신화 16원 12전을 의연하였다.⁶³⁾ 부산항 水晶里에서는 3월 말에 차春쓰의 弟妹와 前侍從 金智泰 夫人 김씨가 애국의연에 남녀가 있을 수 없다며 국채보상에 참여하였다. 박춘필의 제매는 은비녀 8전중, 김지태 부인 김씨는 은가락지 1냥 9전 4푼중을 보내고, 田周汝 夫人 吳氏는 현금 40전, 金 致弘의 16세 女息은 바느질값 1원을 출연하였다. 그리고 6월에 수정동민 40 인이 의연하였을 때에도 여성 20인이 夫人義捐會로 참여하여 현금 40원 30 전과 은가락지와 은비녀 2냥 2전 3푼중을 출연하였다.⁶⁴⁾

진주에서는 晋州愛國婦人會, 愛國償債會 그리고 국채보상경남진주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진주 이진사의 부실과 河僉正의 부실이 동지 10여 부인과 함께 애국상채회를 발기하고 열심으로 모금하여 크게 발달하였다. 55) 3월 19일 애국상채회가 진주 鳳儀樓에서 주최한 償債 연설을 듣고 감동된 진주의 기생 芙蓉은 귀가 즉시 동지 기생들을 규합하여 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의연금을 모았다. 그런데 진주성 안의 姜周植이 애국부인회에서 모은 金貨를 자기네 會로 수납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애국부인회가 즉각 반대하자, 강주식은 다수의 무리와 일본인 순사까지 대동하고 위협으로 애국부인회를 방해하려 하였다. 애국부인회가 강주식의 강폭한 행동을

^{62)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9일, 잡보〈부산항좌천리부인회감선의연취지서〉 · 7월 17일, 광고.

^{63)《}皇城新聞》, 1907년 6월 22일, 광고〈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64)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9일, 잡보〈婦人義捐〉・6월 7일, 광고.

^{65) 《}皇城新聞》, 1907년 3월 28일, 잡보〈婦人愛國〉.

공개하는 寄函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자, 서울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 회장 申離堂은 즉각 애국부인회를 권면하는 謝禮書를 부용에게 발송하였다.66) 진주 애국부인회는 남자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액을 의연하였다. 3월 28일에는 18인이 152원을, 5월 22일에는 232인이 498원 15전을 모아 황성신문사에 보냈다.67) 참여자 대부분이 기생 및 기생과 관련이 있는 여성들이었다. 진주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기생들의 활약이 컸다.68)

昌原에서는 4월중에 李開東母夫人 金氏, 玉舜職母夫人 金氏, 李鍾台母夫人金氏, 朴大見母夫人金氏 등 4인이 昌原港國債報償婦人會를 조직하였다.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母夫人들이 직접 각 마을의 집집을 방문하며 효유하자 많은 부인들이 고무되어 참여하였다. 이들은 4월 하순에 67원 70전을 의연하였고, 6월 초순에는 152명이 참여하여 76원 50전을 의연하였다.69)

이외에도 居昌郡 能陽面 山圃里의 부인 17인이 19원 80전을 의연하였고, 宜寧郡의 退妓 21인이 16원 30전을 모금하여 磚洞 期成會로 수송하였다.70) 釜山夫人義捐會도 부인 10인이 7원 90전을 의연하고, 경주군부인회는 총무 이진사 부실 文菊香이 수합한 금액을 확성신문사에 가서 전달하였다.71)

③ 경기도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는 인천의 掬米積誠會, 金浦郡 黔丹面의 國債報償義務所, 安城의 場基洞婦人會募集所, 南陽郡夫人義成會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1907년 3월 29일 인천에서 기독교 부인들이 발기하여 국미적성회가 조직되었는데, 적성회는 설립취지서에서 세계 각국을 보면 남녀의 분별은 있으나 권리는 여자도 남자와 조금도 등분이 없으며, 또한 여자도 황제의 적자는 일반인데 옛 법만 지키며 안연히 부동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집마다 양식 다루는 주권을 가진 여자들이 매일 먹는 양식 중 식구 수효대로 때마다 한 술

^{66)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7일, 잡보〈진주부융형젼스례셔〉.

^{67) 《}皇城新聞》, 1907년 3월 28일・5월 22일, 광고.

⁶⁸⁾ 朴容玉, 앞의 글, 163~164쪽.

^{69)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8일. 잡보〈夫人熱誠〉 6월 6일. 광고.

^{70)《}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3일, 〈義捐金收入廣告〉・26일, 잡보〈退妓出捐〉.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2일, 광고.《皇城新聞》, 1907년 5월 22일, 잡보〈경남부인회열심〉.

씩 모아 국채를 갚기로 작정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을 정식으로 개최한 국미 적성회는 회원 80여 명에서 권고위원 20명을 뽑아, 위원 2명이 한 동리씩 맡아 여성들의 참여를 권고하였다. 그러자 회원 수는 수일만에 500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매주일마다 위원들이 절약미를 수합한 결과, 음력 2월 한달 동안에 미곡 18섬 8되 8홉, 동화 254원 36전, 1냥중짜리 은비녀 2개가 수합되었다.72) 김포군 검단면 고찬리에 거주하는 한씨·노씨·김씨 등의 부인들이조직한 國債報償義務所는 군내의 각 동리에 다니며, 충효의 윤리에는 남녀의차가 없고 국채보상은 나라의 흥망과 직결되는 것임을 역설하고, 나라가 위급한 때에 부인이라고 안연히 있는 것은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라며 부인들을 일깨우고, 錢荒한 때에 돈만 낼 것이 아니라 금은 패물이나 각종 곡식 등을 힘 닿는대로 의연할 것을 제안하자, 부인들이 일상생활에 별로 소용없는 사치품을 국가에 유효하게 쓰자며 패물을 의연하고, 日常食을 節用하여 곡물을 부인회에 가져왔다.73)

안성군에서는 4월 중순에 군청의 직원들이 국채보상금을 모으자, 안성 장 터의 중소 상인의 부인들도 동심으로 발기하여, 47인이 19원 50전을 의연금 으로 수합하여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냈다.74) 남양군 남양읍내에 거주하는 기 독교 여성인 김희경·김혜경·안마리아 등 3인은 4월에 夫人義成會를 조직 하고, 116명이 의연한 43원 6전을 제국신문사로 보냈다.75) 8월 14일에는 여 주 후바위에 사는 부인 10인이 2원 80전을 대한매일신보사에 의연하였다.76)

④ 충청지역

충청도에서는 鎭川郡 廣惠院內 國債報償夫人會와 준 단체적 활동이 비교 적 활발하였다. 광혜원의 유지 부인들은 3월에 비록 부인이라도 국채보상에 눈감고 침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채보상부인회를 조직하고 의연금을 모집

^{72) 《}제국신문》, 1907년 3월 14일, 〈夫人의 愛國誠〉·4월 1일, 〈인천항적성회취지서〉. 《皇城新聞》, 1907년 3월 24일, 잡보〈夫人의 愛國誠〉.

⁷³⁾ 朴容玉. 앞의 글. 153쪽.

^{74)《}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0일, 잡보〈婦人贊成〉·5월 19일,〈國債報償義捐 金收入廣告〉.

^{75) 《}帝國新聞》, 1907년 4월 17일, 잡보〈婦人熱誠〉.

⁷⁶⁾ 朴容玉, 앞의 글, 154쪽.

하였다. 다수 부인들이 힘 닻는대로 은반지와 은비녀를 내놓아. 제1차 의연 에서 53인이 엽전 404냥과 은비녀 한 개를 의연하였으며, 일찍이 여자교육회 를 설립한 기생 翠蘭은 100냥을 의연했다.77)

또한 충청도에서는 여성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국채보상에 참여한 것보다 집단적으로 의연한 경우가 많았다. 陰城郡 金目面 無極里에서는 3월 초에 일 반 紳士 등이 한화 179워 40전과 은비녀 1개를 의연하자. 21명의 부인들도 은반지 8개, 은비녀 1개, 의연금 15원 20전을 수합하여 대한매일신보사에 보 냈다.78) 報恩郡에서는 7월 말에 都事・進士・監役 등 지역의 지도적인 양반 의 부인 75인이 엽전 334냥 5전을 의연하였다.79)

3) 국채보상운동의 좌절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 확한 지표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사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국채보상을 위한 의연금 갹출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것을 어떻게 관장하여 어떤 방식으 로 일본에 보상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일제의 탄압책 동과 국내의 분파세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운 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온 국민이 이에 참여하자 일관된 지도원리의 부 족으로 이를 수렴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이 운동의 파괴를 꾀하는 일제의 탄 압책동과 국내의 분파세력에 직면하자 우왕좌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 우동의 전국적인 전개과정에서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벗어나 국민들의 정성 어린 의연금을 우선 얼마 동안 다른 용도로 유용하자는 방안이 제기되는 등 일관성 없는 지도원리와 자세를 보여 온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조성시켜 이 우동의 효율적인 전개를 저지하였다. 일제침략이 강화되어 가자 그 추종세력 으로 轉變한 자들은 국채보상운동의 초기에는 이에 동조하는 듯하였으나. 일

^{77)《}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31일, 잡보〈蘭妓熱心〉, 《皇城新聞》, 1907년 4월 29일, 잡보〈婦人愛國誠〉.

^{78)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9일, 잡보〈簪環報捐〉,

^{79) 《}皇城新聞》, 1907년 7월 30일, 광고〈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제 통감부의 탄압책동에 직면하자 그들은 변신하고 이 운동에서 탈락하였으며, 그 후 일제의 사주 아래 이 운동을 파괴하는 망동까지 일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침략의 추종세력으로 전변한 자들과는 달리 꾸준히 이운동을 강력하게 주도한 인사들은 민족적 저항을 강화시켜 이를 효율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책동과 국내 추종세력에 의한 저지 및 농간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80)

국채보상운동은 출발부터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었으나, 동기는 국권을 수호하자는 너무나 소박한 운동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가령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1,300만원의 국채를 보상한다 하여도 당시 일본의 침략을 근원적으로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전국민의 열화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국채보상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일제의 끊임없는 책동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면서도 영세한 서민층이 다수 참가한 반면 고급 관료층이나 부유층들의 참여가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崔昌熙〉

5. 의사 · 열사의 항쟁

1) 장인환 · 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

(1) 스티븐스의 친일 외교활동

1908년 3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정부의 外交顧問인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가 張仁煥과 田明雲에 의해 射殺되었다. 일제 의 한국침략에 앞장서 왔던 스티븐스는 당시 일본특사로 미국을 방문중이었 다.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된 한국

⁸⁰⁾ 조항래, 앞의 글, 701쪽.

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이후 항일민족운동의 전개과정에서 '義烈鬪爭'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1)

스티븐스는 변호사 출신으로 1873년 8월에 주일미국공사관 서기관이 되어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1878년 10월부터 1879년 5월까지 빙햄(John A. Bingham) 주일공사가 휴가차 귀국했을 때, 스티븐스는 대리공사로 근무하면서 일본 관리로부터 유능한 외교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일본이 외국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들을 개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1882년 10월 일본 정부의 고빙제의를 수락하여 주일미국공사관을 사임하고, 11월 1일 일본 외무성 관리로 고빙되었다. 이후 스티븐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며 대미외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스티븐스는 1884년 甲申政變의 수습과정에서 일본측에 외교적인 조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1885년 1월 3일 일본의 特派全權大使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는 스티븐스를 대동하고 일본군 2개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서울에 들어왔다. 스티븐스는 이노우에에게 갑신정 변 때 군대를 동원한 일 등에 대해 사과하지 말도록 했다. 또 한국인은 겁이 많아서 군사적인 위협만 가하면 손쉽게 어떠한 요구 조건도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노우에는 스티븐스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 정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고 배상금 15만원 지불을 강요하는 이른바 '漢城條約'을 체결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서 러시아세력을 완전히 구축하고, 한국을 지배한다는 對韓政策을 추진하면서 스티븐스의 외교적 수완이 필요 하게 되었다. 1900년 4월 1일에 외무성은 스티븐스와 雇續契約을 맺어, 월봉

¹⁾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李德周, 〈스티븐스 암살사건〉(《韓國基督敎史硏究》11, 1986).

金源模. 〈서울에서의 스티븐즈의 親日外交活動〉(《鄉土서울》46. 1988).

^{----, 〈}張仁煥의 스티븐즈 射殺事件 硏究〉(《東洋學》18, 1988).

尹炳奭、〈歐美에서의 義烈鬪爭-李相卨의 遺文과 李儁・張仁煥・田明雲의 義 烈〉(《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一潮閣、1990)。

Andrew C. Nahm, "Durham White Stevens and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9).

700원에 1905년 3월 31일까지 雇績하기로 하였다. 그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외교 일선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계획을 추진, 침략자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²⁾

일본은 러일교섭이 진행중이던 1903년 10월부터 비밀리에 주한 일본공사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매수공작금을 투입하면서 친일파 李址鎔·李根澤 등을 조종하여 韓日議定書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영일동맹의 체결과 미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일본 각의는 1903년 12월 30일에 여하한 경우에도 실력으로 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무단적인 '對韓方針'을 결의하고 착수시기만을 노렸다.

일본은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1월에 체결하려다 실패한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케 하였다. 러시아와의 전쟁상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규정된 '內政改善'을 구실삼아 이른바 韓日協約, 즉〈韓日外國人顧問 傭聘에 관한 協定書〉를 강제로 체결케 하였다. 그 협정서의 내용은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행정고문으로, 외국인 1명을 외교교문으로 하여 재무와외교의 주요 사안에 대해 그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일본은 이 협정에 의하여 大藏省 主稅局長 메가타 다네타로(目質田種太郎)를 재정고문에,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에 각각 취임시켰다. 일본은 이들을 통해 외교와 재정을 감독·정리한다는 이름 아래 한국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침식해갔다. 일본은 이러한 임무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傭聘契約書에서 부여하였다.3)

외교고문의 임무는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타국 정부혹은 타국 인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외교상 및 기타 안건에 관하여 심의·입안할 책임을 가진다. 둘째, 한국의 외교에 관한 일체의 왕복문서및 모든 안건은 사전에 반드시 외교고문의 동의를 구하고 또한 의정회의에 참여하여 외교에 관한 제의를 할 수 있다. 셋째, 외교에 관하여 한국 황제를 알현하여 외교상 의견을 올릴 수 있다.4)

²⁾ 金源模, 〈서울에서의 스티븐즈의 親日外交活動〉, 67~73쪽.

³⁾ 尹炳奭, 〈을사5조약의 신고찰〉(《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27~40쪽.

특히 고문의 권한은, 한국 정부가 자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수조건을 조약문에 명시하였다. 이 용빙계약에 의하여 한국의 주권은 한일의정서보다 더욱 가중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일본은 두 고문의 용빙을 전후하여한국 정부의 각 부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문을 두게 하여 이른바 '고문정치체제'를 확립시켜 나갔다. 일본이 스티븐스를 한국 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선임한 것은 스티븐스가 20여 년간 일본에 고용되어 충성을 바친 인물이므로, 그들의 침략정책을 수행하는데 알맞은 인물이었으며, 친일정책을 고수하던 미국 루즈벨트의 對韓정책과도 합치되었다. 또한 한국의 親美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상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郎)는 워싱턴에서 친일외교 행각을 벌이던 스티븐스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고문을 맡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스티븐스는 10월 14일에 동경에 도착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勳1等 瑞寶章을수여받았다. 일본외무성은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스티븐스 傭聘契約草案을 작성하면서, 그를 한국 외교고문으로 추천하는 이유를, "제국 정부는 20년간 계속 제국을 위해 진력을 다한 귀하의 재능과 충실함을 십분 신용하고 있으며, …"라고 설명하였다.5)

일본은 스티븐스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외교첩자로 만들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계약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스티븐스의 月俸을 1,000원으로 하고 한국 정부가 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스티븐스는, 일본 정부가 작성한 용빙계약안을 가지고 12월 11일에 서울에 도착, 24일에 고종을 알현하고 27일에 외부대신 李夏榮과 정식으로 외교고문 용빙계약을 체결하였다.

1904년 한국 정부의 외부고문으로 선임된 스티븐스는 한국 외부의 모든 왕복외교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스티븐스가 한국 외부대신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티븐스는 의정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고종황제를 알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결국 스티븐스가 한국정치의 최고 감독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4)《}日本外交文書》37-1,374~376쪽.

⁵⁾ 金源模, 〈서울에서의 스티븐즈의 親日外交活動〉, 82~84쪽.

와 같은 스티븐스의 권위에 대해 헐버트(H. B. Hulbert)는 "한국의 대외관계는 스티븐스에 의해 전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요리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6)

한국 정부는 스티븐스를 고빙하면서 그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 특히 고종은 스티븐스를 만날 때마다, 朝美條約의 거중조정 공약을 들어 미국이 한국을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오히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신임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가 거중조정에 바탕을 두고 서울 주재구미열강의 외교대표들에게 벌이고 있는 구원호소 비밀계획을 사전에 봉쇄하는데 주력했다. 고종이 미국·러시아·프랑스에 밀서를 전달하려는 시도도일본 첩자와 스티븐스의 친일 외교활동으로 좌절되었다. 이와 같은 스티븐스의 친일행위는 在韓 미국 실업인들도 "스티븐스는 일본 관리 자신들보다도더 친일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혹평했을 정도였다.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봉급을 받으면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대한침략을 위해 친일외교를 감행했으며, 첩자비밀외교를 통해 일본의 보호국 수립계획을 적극 추진하였다. 1905년 강제적인 을사조약 이후 스티븐스는 한국 외부고문에서 통감부고문이 되었고, 1906년 의정부고문으로서 일제의 통감정치를 도왔다.

이후 일본은 만주에서 군사점령정책을 시행하면서 英·美 실업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영·미 두 나라와 공약한 아시아 문호개방정책을 폐기하였다. 이로 인해 양국으로부터 엄중한 외교적 항의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일본인 배척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스티븐스를 미국에 파견하였다. 즉 스티븐스의 미국행 임무는 문호개방문제의 해명과 일본인 배척운동을 해결하고 또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정당성을 미국에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⁶⁾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p. 212.

⁷⁾ Lee Houchins and Chang-su Houchins, "The Korean Experience in America, 1903~1924," *Pacific Historical Review*, 43(November, 1974), pp. 556~558.

(2)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

스티븐스는 1908년 3월 3일 일본에서 출발, 20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도착 즉시 그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The San Francisco Chronicle)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는 제목의 친일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한국을 모욕하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자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은 일제히 분개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하와이 사탕농장에 이민왔다 미주 본토에 들어온 노동자와 몇 명의 유학생, 우국망명자 등 150명 내외가 共立協會와 大同保國會를 설립하여 그들의 권익신장과 조국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날(3월 21일) 저녁 8시에 긴급히 共立館에서 두 단체를 중심으로 共同會를 개최하여 李學鉉・文讓穆・鄭在寬・崔有涉 등 總代 4명을 선발하였다.

이들이 스타븐스에게 강경한 항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숙소로 스타븐스를 찾아가 성명서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스타븐스는 여전히 "한국에 이완용과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통감이 있으니 한국의 큰 행복이요 동양의 다행이다"는 망언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총대들은 주먹으로 스타븐스의 면상에 타격을 가하고, 그의 친일행적과 일본의 포학한 한국침략 만행을 규탄한 후 떠났다. 신변의 불안을 느낀 스타븐스는 3월 23일 급히 워싱턴을 향해 떠나려 하였다.

스티븐스 방문 이후 총대의 지도자 이학현은 즉각 스티븐스의 친일성명서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기고하였으며, 총대들은 22일 공립회관에서 공동회를 개최하여 스티븐스를 방문한 경과를 보고하고 다음 대책을 숙의하였다. 이 자리에 대동보국회의 張仁煥과 공립협회의 田明雲도 총회에 참석하여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후 각각 권총과 스티븐스 사진을 준비한 끝에 사살의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스티븐스가 워싱턴 행 대륙횡단철도를 타기 위하여 오클랜드 페리부두 선창으로 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을 거사 장소로 택하였다.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경 호텔 자동차가 부두에 도착하자 키가 작은 전

명운이 재빨리 스티븐스에 접근, 손수건으로 감싼 권총을 꺼내어 그에게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이었다. 당황한 전명운은 총자루로 그의 면상을 후려치고 달아났다. 스티븐스는 안면 왼쪽 볼에 심한 파열상을 입고 자동차 뒤쪽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전명운을 추격하였다. 몇 발자국을 갔을 때 스티븐스 뒤쪽에서 장인환이 권총 3발을 발사했다. 제1발은 달아나는 전명운의 어깨 부분에 명중하고, 제2발은 스티븐스의 오른쪽어깨뼈를 맞추고, 제3발은 스티븐스의 등 아래쪽 복부를 명중하였다. 장인환은 체포되고 전명운과 스티븐스는 항만응급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중앙구급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후 스티븐스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25일 사망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서로 연행된 장인환은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된 동기를 한글성명서로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발표되 었다. 또한 암살기도혐의로 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된 동기를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일본의 보호정치 이래로 완전 파멸 상태이다. 스티븐스는 일본 을 도와 한국 覆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 外部 고문관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일본의 一大親友 (great friend of Japan)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을 위해 봉사한다 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후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위해 한국인에게 온 갖 잔인한 일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그는 한국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한국을 위해 일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 지금 일본 은 세계열강의 制裁 때문에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스 티븐스를 한국통감부 미국인 고문관이란 직함을 빌어서 미국에 파견, '일본의 한국지배는 한국에게 유익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미국 국민에게 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 연설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수백 만 우리 동포는 그의 謀陷으로 학살되고 있다. 그가 만약 이번의 美國使命을 완수하고 한국으로 되돌아 간다면 더 많은 동포가 죽 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 그를 쏜 것이다. 이미 학살된 한 국 국민의 영혼을 위로하고, 스티븐스에게 더 이상의 학살을 당하지 않도록, 그 리고 우리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는 그를 저격한 것이다. 인생이란 무엇인

가. 사람은 누구나 죽을 줄 알아야 한다. 만약 내가 그 자를 죽이고 나도 죽는 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의 영광이요, 우리 국민의 행복이 될 것이다(The San Francisco Chronicle, March 25, 1908).

장인환은 스티븐스 사살에 대하여 조국을 구하기 위한 거사로서 한국 정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본의 앞잡이 스티븐스를 저격한 것은 정당한 애국행위라고 역설하였다.

스타븐스 사살은 미국사회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장인환이 스타븐스를 사살한 장면을 목격한 한 미국인 부인은 "이 사람이 비록 연소한 황인종이나 애국지사요 의기로운 남자로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身命을 희생같이여기고 있으니, 물론 누구든지 국민된 자는 제 나라를 위하여 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여야 되겠다는 것이다"8)라고 장인환의 애국독립정신을 크게 찬양하였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여러 신문은 장인환과 전명운을 애국자, 스타븐스를 '公敵'으로 규정하면서 사건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사진은 물론 장인환의 저격장면과 전명운의 타격장면을 묘사한 몇 가지 큰 삽화까지 그려 함께 게재하였다. 언론보도의 대부분 논조는 장인환과 전명운의 의거를 정당하고 애국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하는 기사까지 등장하였다. 이 의거가 때마침 미국 하층민들 사이에서 일본인 노동자 배척운동이 벌어졌던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시민들로부터 큰 이해와 동정을 살 수 있었다.9)

사건 발생 후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는 한인공동회를 개최하고 장인환재 판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재판에 대비하여 문양목·백일규·정재관 등 7명을 판사 전담위원으로 선임하고 4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즉석에서 7백 여 달러를 의연금으로 수금하였다. 이어 두 의사의 공판투쟁을 위한 의연금은 미주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은 물론이고 국내와 멕시코·러시아·중국·일본 등지의 한인들로부터도 계속 답지한 결과 총 1,135명으로부터 모은 의

^{8)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29일.

⁹⁾ 尹炳奭, 앞의 글(1990), 371~373쪽.

연금 총액이 8,568원 41전에 달했다.10) 이것으로 변호사와 통역 비용 등 공 판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전명운은 어깨 부분에 입은 총상이 치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 퇴원해서 4월 3일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살인사건의 공범을 강조하였지만 변호인은 공모사실을 완강히 반박하고 오히려전명운 역시 총을 맞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는 구속기소된 지 97일만인 1908년 6월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석방된 전명운은 장인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극비리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 그후 장인환 재판이 완료된 후 1909년 7월까지 블라디보스톡에 체재한 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11)

장인환은 3월 27일 계획에 의한 일급 모살혐의로 공식 기소되어, 약 8개월 간 재판투쟁을 벌였다. 일제가 고용한 원고측 변호사와 검사는 장인환을 계 획적인 일급 살인혐의로 사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 무료 변호인 단은 애국충정의 발로로 일종의 정당행위로서 무죄석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09년 1월 2일 장인환은 사형을 면하고 25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네 차례의 가석방청원서를 제출한 끝에 장인환은 1919년 1월 10일 가출옥하였다.¹²⁾

(3) 장인환 · 전명운 의거의 영향과 의의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은 당시 미주 교포 신문인《共立新報》와 《大同公報》, 그리고 미 일간지《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의해 보도되었다. 국내에는《大韓每日申報》에 의해 사건 2일 후 알려져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도되었고.¹³⁾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간된《海朝新聞》.

¹⁰⁾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1(1965), 594\.

¹¹⁾ 金源模、〈張仁煥의 스티븐즈 射殺事件 研究〉、

¹²⁾ 金源模, 위의 글.

^{13) 《}共立新報》, 1908년 3월 25일, 〈의사당인환씨디답〉·〈의사뎐명운씨디답〉·〈스 데분은 한국이 공적이라〉·〈政敵須知分來歷〉. 《大韓每日申報》, 1908년 3월 27일 및 4월 16·17·22일.

그리고 그 뒤에 발간된《大東共報》등에도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후 항일민족운동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장인환·전명운이 동포들에게 보낸 寄書는 항일의식과 국권수호의지를 북돋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스티븐스를 저격하다가 중상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전명운은 《공립신보》에 기서하여, 스티븐스가 을사5조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정미7조약을 맺어 고종을 협박하고 정부를 양도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이 세계의 이목을 가리고 한국을 아주 병탄할 뜻으로 스티븐스를 미국에 밀파하여 한국이 자립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하여 열국의 간섭을 막으려 했다. 만일 이 때에 그냥 있으면 한국의 참혹한 형상을 세계에 설명할 곳이 없게 되는 까닭에, 스티븐스를 죽여앞의 원수를 갚고 후의 화를 막기로 결심하고 스티븐스를 저격하였다"고 밝히고, 금일 우리의 사세를 보건대 병력으로 대적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이런계교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내외 동포는 합심하여 자기 몸을 돌아보지 말고 옳은 일을 행하면 독립자유는 머지 않아 회복될 것이라고 부탁하였다. 《공립신보》는 이어서 〈전씨 애국가〉를 게재하였다.

역화 우리 동포들아 일심애국 힘을 써서 四千년래 신성동방 신세계에 빛내보세. 사농공상 동력하면 대한제국 자연 부강 자유독립 하고보면 세계상에 제일일세. 잊지마라 잊지마라 충군애국 잊지마라. 일심하세 일심하세 나라위해 일심하세. 건곤감리 태극기를 지구상에 높이 날려 만세만세 만만세로 대한독립 어서하세.

(《共立新報》, 1908년 4월 1일, 〈일편 이국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감옥에 복역중인 장인환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간되는 《대동공보》에〈謹告愛我同胞諸君〉이란 글을 기고하였다.14)

^{14) 《}大東共報》, 1909년 5월 2일, 기서〈謹告愛我同胞諸君〉.

그는 "골절에 사무친 원한이 마음에 맺히게 되면, 비록 법률로 허락하지 아니하는 일이라도 주저할 것 없이 행할 것"이라 하고, "국가에 수치가 되는 공적이나 국가를 침해하는 도적을 대하는 데는 공법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스티븐스 저격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상의 장인환과 전명운에 의한 스티븐스 사살은 항일투쟁사상 쾌거로서 이후 항일운동에 다방면의 영향을 미쳤다.

첫째, 무장항일투쟁의 기폭제 구실을 하였다. '용기 없는 한국민족'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국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려준 최초의 친일 요인 사살사건으로서 한국독립운동사상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후 항일민족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를 이루었다.¹⁵⁾

둘째, 국내 의병투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티븐스의 사살은 《대한 매일신보》가 자세히 국내에 보도하여 각계 군중을 크게 격동시켰다. 이로 인해 군대 해산 후 의병투쟁의 확산에 박차를 가하였다.16)

셋째, 러일전쟁 이래 한국병합을 위한 일제침략과 그 하수인의 하나인 스 티븐스의 '不義飛行'을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¹⁷⁾

넷째, 미주 한인의 합동과 한인기구의 통일을 가져왔다. 장인환·전명운의 재판을 계기로 단합한 재미 한인 및 시베리아·만주의 한인은 해외에서나마 크게 뭉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필요에 따라 여러 곳에 뿔뿔이 세워졌던 단체들은 미주 전체에 걸쳐 하나로 모여 통일된 활동으로 항일하고 국권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 모두에게 퍼져 갔다.18) 이로써 해외 교포들의 민족

¹⁵⁾ 李德周, 앞의 글, 15쪽.
金源模,〈張仁煥의 스티븐즈 射殺事件 研究〉.

¹⁶⁾ 강재언, 〈평민의진의 대일항전〉(《한민족독립운동사》1, 국사편찬위원회, 1987). 일제문헌은 그 파급영향에 대하여, "3월 하순에 전 한국 정부 고문 겸 통감부 촉탁이었던 미국인 스티븐스가 미국에서 排日主義의 한인에게 살해되었다. 그 소식이 한국 안에 전해지자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형세가 일변하고 賑勢가 또 다시 격증하여, 폭도 봉기 이후 미증유의 熾盛을 이루어 그 소요구역이 확대되 어서 6월 현재 전국의 의병장이 241명, 의병수가 32,415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朝鮮駐箚軍司令部,《朝鮮暴徒討伐誌》, 97~98쪽).

¹⁷⁾ 尹炳奭, 앞의 글(1990), 388~392쪽.

¹⁸⁾ 손보기, 〈미주동포사회〉(《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5~666쪽.

운동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고, 해외민족운동을 국내 항일민족운동과 연결시키게 되었다.¹⁹⁾

〈崔昌熙〉

2)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1) 이토 히로부미 사살 배경

1910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安重根에 의한 일본 樞密院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사건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1) 이사건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암살자'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일합병을 시기적으로 앞당길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2) 이에 반하여 안중근 자신은 스스로를 의병으로 규정하여 개인적으로 행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병 參謀中將으로서 전개한 독립전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일제가 침략의 의도를 은폐하고 합병의 필연성을 강조한 정략적 견해이고, 후자의 경우 무력투쟁을 통한 구국운동의 한 표현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1909년 7월 6일 일본 閣議에서는〈韓國 倂合에 관한 案件〉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기초로〈對韓施設大綱〉이 확정되어 구체적 작업에 들어갔다.3) 일제

¹⁹⁾ 李德周, 앞의 글, 11 · 15쪽.

¹⁾ 안중근의 사상 및 독립운동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현종,〈살신보국으로 광복운동한 안중근〉(《나라사랑》34, 외솔회, 1979).

愼鏞廈, 〈안중근의 사상과 국권회복운동〉(《韓國史學》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윤병석, 〈안의사의 의병활동과 그의 사상〉(《안중근의사연구의 어제와 오늘》, 안중근의사기념관, 1993).

김창수, 《항일의열투쟁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金鎬逸,〈安重根義士의 東洋平和論〉(《安重根의 義烈과 東洋平和論》, 안중근의 사 의거 제89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1998).

自奇寅、〈安重根의 國權守護運動과 思想〉(《清溪史學》13, 1997).

²⁾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 7(1968), 138~139쪽.

³⁾ 外務省 編,《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上(東京:原書房, 1965), 315~316쪽.

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그 해 11월 17일에 고종을 협박하여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국내의 독점자본 형성의 촉진과일반 민중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방어능력을 상실한 한국'을 완전 병합하기 위한 전초 단계였다. 또한 일제는 이른바 아시아 연대주의론4)을 내세워 서구열강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선이 대등한 형태로합방하여 大東國을 건립하고 淸國과 연계하자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이는 한국병합과정에서 대아시아주의자들이 침략성을 은폐하는 관념적 무기로서 그리고 친일자들이 자신들의 매국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5)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정책의 실질적 정책 실행자, 특히 회유파의 거두 이 토6)는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대한 정책의 실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당시 초대 통감의 자격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쟁점속에서 이토는 對歐美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미열강에게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교경험이 풍부하고 천황의 신임이두터운 문관을 초대 통감에 임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년간 외교경험이 풍부한 이토가 한국 통감으로 결정되고 그는 바로 군대통수권을 확보하였다. 이는 그가 재임중에 한국의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무력으로 제거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토는 통감으로 재직하면서 일본 자본주의체제의 이식에 적합 한 구조로 한국사회를 개조하기 시작하였다.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

⁴⁾ 아시아연대론은 征韓論・脫亞論과 함께 일본의 침략주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상위개념이다. 즉 이 논점은 일본만이 근대민족국가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朴英宰,〈近代日本의 韓國認識〉; 趙恒來 編著,《日帝의 對韓侵略政策史研究》, 玄音社, 1996 참조). 이는 일본이 제국주의체제를 형성하고 그와 함께 독점자본제적 경제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필수적인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⁵⁾ 旗田巍, 《日本人의 韓國觀》(一潮閣, 1983), 26~31쪽.

⁶⁾ 이토 히로부미의 생애 및 韓國觀에 대하여서는 市川正明,《安重根と日韓關係 史》(原書房, 1979), 119~128쪽 참조.

⁷⁾ 柳在坤,〈伊藤博文의 對韓侵略政策(1906~1909)-〈大臣會議筆記〉를 중심으로 -〉(趙恒來 편역, 앞의 책), 309~310쪽.

든 면에서 한국은 극도로 피폐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조하지 않고는 도저히한국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8) 이토의 이러한 주장은 일제의 對韓 정책이 善政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며, 이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이토는 1907년 6월 4일에 "한국을 멸망시키는 자는 일본인이 아니라 내외 사정을 모르면서 경거망동을 하는 한국인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긴요한 방침은 한국이 일본과 성실하게 친목을 도모하고 존망을 같이하는 데 있다"의고 하였다. 이토의이러한 대한 정책은 안중근이 제시한 '이토의 죄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토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제반 여건, 즉 헌병경찰제도의 확립, 재정·화폐제도의 확립, 토지수탈과 식민지 교육제도를 완비하였다. 이는이토가 동양평화의 유지를 주장한 日韓提携論이 고도의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2)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과 그 역사적 의의

1909년 10월 일본 추밀원의장 이토는 중국 동북지방(만주)을 시찰하기 위하여 여행길에 올랐다. 일본측에서는 이토의 만주 여행이 개인 자격으로의여행이며 아무런 사명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여행에는 완전한 식민지 지배로의 한국의 병합과 만주침략에 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10) 만주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이토는 양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충족시키고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토가 안중근에게 사살당한 후 1910년 일본과 러시아가 제2차 '日露협약'을 체결하였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만주에서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하여 양국이 이 지방에서 특수한 지위를 상호 확인하여 양국간 이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

⁸⁾ 國史編纂委員會,《統監府文書》1(1998),〈韓國施政改善に關する協議會 第14回 會議錄〉, 278\.

⁹⁾ 金正明 編,《日韓外交資料集成》6 中(東京 : 巖南堂書店, 1965), 508~509\.

¹⁰⁾ 김창수, 앞의 책, 52쪽.

여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다는 것이었다.11) 따라서 이토의 만주시찰 이 한국의 병탄과 만주지배를 위한 러시아와의 밀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었다고 판단한 안중근은 한국 식민지화의 원흉으로서 이토를 지목하고 그를 제거하고자 했다.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읍 광석동에서 진사 安泰勳의 장남 으로 태어났다. 조부 仁壽는 상당한 자산가로서 도내의 명망가였으며, 부는 초년에 신동으로 불릴만큼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안중근은 6세 때 신천군 淸溪洞으로 이주·성장하였다.¹²⁾ 1905년 말 구국운 동의 뜻을 펴고자 고국을 떠난 안중근은 중국의 威海衛・上海 등지를 편력 하면서 동지를 구하고 해외정세를 관찰하였다. 그 뒤 1906년 1월 부친상을 당하여 귀국한 후 교육사업에 진력하여 평안도 진남포에 거주하면서 三興・ 敦義학교를 창설하여 후진양성에 힘쓰는 등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1907년 일본에 의한 군대 해산과 고종의 폐위 속에서 안중근은 북간도를 경유하여 露領의 海蔘威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李節允・嚴仁學・金起 龍 등과 교유하면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3] 1908년 6월에는 두만강을 건 너 慶興에서 일본군과 세 차례 교전하여 일본군 5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會寧에서의 격전에서는 대패하고 말았다.14) 이와 같이 그가 의병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할 당시 부터 무장투쟁이 구국의 첩경이라는 믿음의 결과였다. 안중근은 민족의 당면 한 과제로 교육과 실업에 의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과 일제의 침략으로 부터 국권을 수호하는 일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15)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였지만 국권상실의 위기에 직면하여 현실 적으로는 무력투쟁이 국권수호를 위한 적극적 · 우선적인 방법으로 파악되었

¹¹⁾ 外務省 編, 앞의 책, 332쪽.

^{12) 《}안중근의사자서전》(안중근의사 숭모회, 1979), 17~18쪽. 市川正明, 앞의 책, 137~141쪽, 安重根의 소년, 청년시절에 대해서는 愼鏞廈, 앞의 글, 307~312쪽 참조.

¹³⁾ 市川正明, 앞의 책, 147쪽.

¹⁴⁾ 김창수, 앞의 책, 53쪽.

^{15) 《}안중근의사자서전》, 106~108쪽.

던 것이다.16) 그러나 1908년 8월 이후 본격적인 국내진공작전이 실패하고, 그는 1909년 3월 20일 노조키에프스크에서 동지 11명과 함께 '斷指同盟'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왼쪽 무명지 첫마디를 모두 잘라 그 피로써 '대한독립' 4자를 써서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일제 고관 및 친일과 암살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17) 이 결사는 일종의 解黨決心式과 같은 것으로 의병투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동행동보다 개별행동을 지향하는 투쟁방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토의 저격이 大東公報社를 중심으로18) 한 특 공대의 소수 정예대원에 의한 거사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병전쟁의 연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10월 10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동공보사에서 안중근을 비롯한 7명은 한국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교란자 이토가 제정러시아 大藏大臣 코코프체프(Kokovsev, V. N.)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보도에 대하여 '그를' 포살할 절호의 기회라고 결정하였다. 이때 안중근이 자진하여 실행 책임을 맡았으며 禹德淳도 안중근과 공동 실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19) 그리하여 1909년 10월 21일 俞鎭律과 李剛 등의 전송을 받으면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였다.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대동공보의 하얼빈 지국장인 金衡在와 회동하고 이번 거사에 曺道善을 합류키로 하였다. 이리하여이들 4인은 거사계획을 상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20) 따라서 이토의 도착지역인 하얼빈과 蔡家溝 두 곳에 저격 지점을 설정하였다.

안중근은 기차의 정차역인 채가구에는 우덕순·조도선을 배치하고 하얼빈에는 자신이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채가구에서 기차가 정지하면 우덕순과 조도선이 기차에 뛰어 올라 이토를 저격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종착지인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를 공격하기로 계획하였

¹⁶⁾ 白奇寅, 〈安重根의 國權守護運動과 思想〉(《淸溪史學》13, 1997), 444쪽.

¹⁷⁾ 단지동맹 회원은 金基龍・姜基順・劉致鉉・朴鳳錫・白藥奎・康斗瓚・黃吉秉・ 金伯春・金春化 등이었다(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 6,331等).

¹⁸⁾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 7. 205쪽.

¹⁹⁾ 愼鏞廈, 앞의 글, 338쪽.

金鎬逸,〈安重根義士의「동양평화론」〉(《安重根의 義烈과 東洋平和論》, 安重根義士 義擧 第89周年 紀念 學術심포지엄,安義士紀念館, 1998), 42쪽.

²⁰⁾ 愼鏞廈, 위의 글, 345쪽.

다. 아침 9시경 이토와 코코프체프는 열차 안에서 약 30분간 중요 회담을 마친 뒤 플랫폼으로 나와서 환영나온 하얼빈 주재 각국 외교사절과 인사를 나누고 러시아군 의장대를 사열하였다. 그는 사열을 마친 뒤 뒤돌아 서서 다시귀빈열차 쪽으로 향하였다. 이 때 러시아 의장대 뒷쪽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안중근은 이토가 자기 옆을 지나가자 이를 놓치지 않고 이토의 정면에서 그를 향하여 정확히 권총 3발을 발사하였다. 안중근이 이토를 향하여 발사한 탄환은 이토의 가슴과 복부에 정확하게 명중되어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동양의 평화를 상투적으로 외쳤던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는 그가 침략했던 대한제국의 애국청년 안중근에 의해 총살되었다.²¹⁾

이와 같이 안중근의 이토 암살은 그 자체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안중근 의거는 한 개인의 단발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적·조 직적인 행동이었다. 사살 대상으로 한국 식민지화 정책의 거두였던 이토를 택한 것은 비록 거사가 실패하였을지라도 사건 자체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의도에서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안중근이 사살 대상으로 이 토를 택한 것은 그가 '동양평화²²⁾를 해치고 한국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제 일의 적'이었기 때문이다.²³⁾ 안중근이 제시한 이토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이토 히로부미의 罪狀 15항목〉

- 一.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
- 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대하여 매우 불리하게 한 일
- 1907년 12개조 조약을 체결하여 모두 한국에 대하여 군사상 대단히 불리 하게 한 일
- 一.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일

²¹⁾ 이토 사살 사건으로 안중근을 비롯한 총 15명이 기소되었으며 일제는 외국인에 대한 폭압적 영사재판권을 실시하여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에게 사형, 우덕술에게 징역 2년, 조도선·劉東夏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하였다(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 7, 487~488쪽). 이러한 재판을 거쳐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였다.

²²⁾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신용하, 앞의 글, 351~356쪽.김호일, 앞의 글, 51~59쪽.

²³⁾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 6, 176\.

- 一.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 일
- 一. 불평등 조약의 체결에 대하여 분기한 한국인 의병 등 양민을 살해한 일
- 一. 한국의 정치, 기타의 권리를 약탈한 일
- 一. 한국 학교에서 사용한 좋은 교과서를 폐기처분한 일
- 一. 한국 인민에게 신문의 구독을 금한 일
- 一. 화폐개혁과 第一銀行券 발행한 일
- -. 3백만원의 국채를 모집하고 한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수탈하기 위하여 사용한 일
- 一. 동양평화를 교란시킨 일
- 한국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호의 이름을 빌어 한국 정부의 일부 인사와 의사를 통하여 한국에 불리한 시정을 펼친 일
- 一. 일본 孝明先帝를 살해한 일
- 一. 한국민이 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황제나 기타 세계 각국에 대하여 한국은 무사하다고 속이고 기만한 일(國史編纂委員會 編,《韓國獨立運動史》資料 6, 3~4쪽).

한편 안중근에 의한 이토의 암살은 온 세계에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다. 식민지 정책에 몰두하고 있던 열강들은 이토의 죽음에 깊이 동정하고 있는데 반해,²⁴⁾ 중국 북경정부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약소 민족국가는 안중근의 의거를 크게 보도하면서 일본의 팽창정책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⁵⁾ 이와 같이 안중근의 이토 암살은 당시 이토의 국내외적 인지도 및 일본의 대륙침략정책, 조선의 식민지화 정책의 실체를 국내외에 선전하고,이 자리를 빌어 전 세계를 향하여 일제침략을 규탄하고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려는 독립운동가의 민족사적 행위였다. 왜냐하면 안중근은 공판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암살자가 아닌 한국의병 참모중장으로서 동양평화의적 이토를 척살한 것이기에 적군의 입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안중근이 공판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이토 사살이 목적이 아니라이를 통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야욕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전쟁임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金周溶〉

²⁴⁾ 國家報勳處,《亞洲第一俠客》3(1997), 275~276\.

²⁵⁾ 市川正明, 앞의 책(1979), 196~200쪽.

3) 이재명의 이완용 척살 미수

안중근에 의하여 사살된 이토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달 뒤인 1909년 12월 4일 친일단체 一進會는 대한제국 2천만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면서 백만 회원의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한일합병에 대한 上奏文과 의견서를 제출하고합방성명서를 발표하였다.1)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급진적 합방론자인 가츠라 타로(桂太郎)·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에게 이 문건을 제출하고국내 각 지방관청과 사회 각계에까지 보내게 되었다.2) 일진회의 합방성명서가 발표되자, 大韓協會·西北學會·漢城府民會 회원 등이 圓覺社에 모여 일진회의 매국적 행위에 대한 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3) 이러한 가운데《大韓每日申報》는 12월 5일자 사설을 통해 "오늘날 大韓國의 형세는 사법권까지넘겨주고 이제 남은 것은 大韓이라는 빈 이름뿐이다. … 그러나 너희가(일진회) 이름과 실상이 같게 되도록 노력은 못할지언정 어찌 차마 그 이름까지 없애고자 하는가"4)라고 일진회의 기만성을 통박하였다.5)

한편 일진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李完用은 李容九·宋秉畯의 주도로 합방이 이루어질 경우 자파세력이 입을 타격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합방의 공로자가 되기 위해 일본에 합방을 청원하는 한편 일진회원을 매수하거나 일진회의 무력화 정략을 추진하였다.6) 이와 같이 이완용은 합방을 둘러싼 일진회와의 갈등 속에서 보다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7) 따라서 이완용이 통감부 정책에 조응하고 그의 권력유지를 연장하

¹⁾ 一進會의 친일행각과 합방론에 대해서는 金東明、(一進會と日本一政合邦と倂合一)(《朝鮮史研究會論文集》31, 朝鮮史研究會, 1993) 참조.

²⁾ 김창수, 《항일의열투쟁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56쪽.

³⁾ 金正柱,《朝鮮統治史料》3(韓國史料研究院, 1970), 446쪽.

^{4) 《}大韓每日申報》, 1909년 12월 5일, 논설.

⁵⁾ 윤덕한, 《이완용평전》(중심, 1997), 294쪽.

⁶⁾ 이완용은 일진회가 한국君民을 일본의 노예로 삼고자 한다고 하여 일진회의 교란행위를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여론몰이 형식으로 자신의 私黨인 國是遊說團을 동원하여 국민대연설회를 개최하였다(韓明根, 〈統監府 時期 李完用 研究〉, 《제62회 한국민족운동사월례발표문》, 1999, 14~15쪽).

⁷⁾ 朴永錫、〈李完用研究〉(《國史館論叢》32, 1992), 242쪽.

는 방향으로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면서 병합체결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李在明은 그를 척살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족정기를 드높이고자 하였다.8)

이재명은 1890년 평안북도 宣川에서 태어났으며 13세 때 천주교에 귀의하였다. 1904년 미국 신부의 주선으로 美國勞動移民社의 모집에 응하여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년간 노동에 종사하였다.⁹⁾ 이후 제1·2차 한일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1907년 10월 귀국하여 친일매국노 이완용·이용구·송병준 등을 제거하여 민족정기의 구현과 국권수호를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1909년 11월경 이재명은 먼저 서울에서 동지 吳復元·金龍文을 포섭하고, 평양에서 金貞益·鄭義道·朴泰殷·池麟瑞 등을 규합하여 친일매국노에 대한 제거 작업에 착수하였다.10)

1909년 11월 말 이재명은 평양 성내 박태은의 자택에서 김정익·李東秀·李應三 등과 재차 거사계획을 모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이완용 제거를 역설하고 1차 회합시에 결정된 사항, 즉 이용구 사살을 바꾸도록 종용하였으나 김정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두 사람의 논쟁이 격렬해지자 이용구·이완용 동시 제거라는 타협안이 제기되었으며, 이재명과 이동수는 이완용을 맡고 김정익과 趙昌鎬는 이용구를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4일 일진회의 합방성명서가 발표되고 전국에는 더욱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2월 6일 이재명은 이동수·박태은·김정익·조창호와 회동하여 각각 업무 분담을 결정하였다. 즉 박태은은 자금조달, 조창호는 무기입수, 김용문은 서울로 파견하여 이용구·이완용의 동정을 탐지하도록 하였다.11)

이재명은 이와 같이 역할 분담을 결정하고 12월 12일 경 다시 서울로 와 거사 때 착용할 학생복과 무기구입을 완비하였다. 그리고 17일 경 이재명의 숙소에서 마지막 회합을 갖고 先 이용구 後 이완용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

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1979). 554쪽.

⁹⁾ 宋相燾, 《騎驢隨筆》(國史編纂委員會, 1955), 156\.

¹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1, 476~477쪽.

¹¹⁾ 朴成壽、《韓國獨立運動史論》(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445쪽.

과 동시에 각자 무기 분배를 마치고 김용문에게 사실을 알렸다. 여기서 이재 명은 이완용을 비롯한 여러 대신이 22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개최되는 벨기 에 황제 레오폴트2세의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1909년 12월 22일 오전 11시 반경 총리대신 이완용이 추도식장인 성당에서 나와 인력거를 타고 앞으로 지나치자 이재명은 감추었던 칼을 뽑아 이완용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이 때 인력거꾼이 앞을 가로막자 그를 벤 이재명은 곧바로 인력거에 올라타 이완용의 어깨를 단도로 찔렀고 이완용이 인력거밑으로 굴러 떨어지자, 그의 위에서 수차례 찔렀다. 세 곳에 상처를 입은 이완용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가고, 12)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13) 당시 현장에 있던 이동수는 이재명이 거사를 성공시켰다고 판단하여도피하였다.

국권수호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재명의 이완용 척살 미수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이재명은 이완용의 죄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一.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일본에 이양시키고 통감부를 설치한 일
- 一. 헤이그 밀사사건을 빙자해서 송병준과 함께 황제를 위협하여 양위케 한 일
- -. 7조약을 체결하여 여러 방면의 권력을 통감에게 이양하고 군대를 해산시 키 일
- 一. 어린 황태자(李垠)를 일본에 인질로 보내고 일본 여자와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일
- 一. 고종을 일본에 건너가게 획책한 일
- 一. 엄동설한에 강제로 황제를 서북지방에 순행케 한 일
- 一. 사법권을 일제에게 위임하여 국내의 여러 애국지사를 처벌케 한 일
- 표면적으로는 일진회장 이용구로 하여금 한일합병 성명서를 발표케 하고 내면적으로는 합방을 추진한 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 집》, 519쪽).

이재명이 이완용을 사살하고자 했던 것은 이완용의 친일행각이 극에 달했

¹²⁾ 이완용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은 이재명이 이완용을 올라타고 칼로 찔렀을 때 그의 두루마기가 방패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大韓每日申報》, 1909년 12월 23일).

¹³⁾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1, 478쪽.

으며 그 정점이 매국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 듯이 이재명이 제거하고자 했던 인물이 이완용 이외에 송병준·이용구와 같은 매국적 친일분자라는 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이재명은 이완용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14)

이재명의 이완용 저격 사건이 발생하자 통감부에서는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사건의 성격을 단지 兇漢에 의한 치졸한 행동으로 격하시키고자 하였다. 즉 당시의 민심은 이완용의 저격사건으로 친일파에 대한 원성과 이재명의 멸사봉공에 고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감부는 "이토의 피살, 이완용 총리의 遭難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하는 상태라면 이와같은 추이가 계속될 때 한국의 전도는 불투명하며(한국사회)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15)고 선전하였다. 이는 합병 시점에서일제가 한국인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정 기간 친일파들에게 보호막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친일파의 사건 축소 가운데서도 이재명은 확고한 신념으로 공판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재명의 담당검사는 논고에서 "이재명은 우국지사라고 자칭하나 편견자의 한 사람일 뿐이며 특히 그가 공범이 없다고 자칭하는 것은 자기의 허영심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동지를 沒却코자 한 비열한 심사에서이다. 또 이용구를 죽이려다가 이완용을 죽이려 한 것도 역시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자 국가사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16)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핍박에도 동지를 보호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이재명의 의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공판은 1910년 4월 13일 하루만에 끝내고, 5월 18일 이재명에게 사형, 김정익·이동수·金丙錄·조창호 15년, 오복원·全泰 善 10년, 박태은·김용문 7년, 李學巡·金履杰·金炳鉉·이응삼 5년이 각각

¹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1. 527쪽.

¹⁵⁾ 國史編纂委員會,《統監府文書》6(1999),〈總理 李完用遭難ニ付民心〉(1909. 12. 28). 447~448쪽

¹⁶⁾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68쪽.

언도되었다. 사형이 언도되자 이재명은 "불공평한 너의 법으로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하지만 나의 忠魂은 빼앗지 못할 것이라"¹⁷⁾고 자신의 확고한 애국심을 표현하였다. 요컨대 이재명의 거사는 친일행각에 대한 경종과 국권회복운동에서의 애국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준 의열투쟁의 표본이다.

〈金周溶〉

¹⁷⁾ 宋相燾,《騎驢隨筆》, 158쪽.